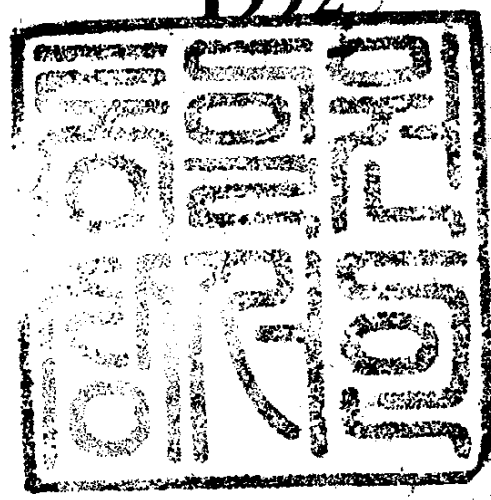


222
3000

「南北基本合意書」解説

1992



(1992年5月21日)
統一院

統一院

- 本 冊子는 「南北基本合意書」가 발효됨에 따라 合意書에 담겨 있는 基本精神과 理念, 그리고 현실적 實踐問題 등에 대한 國民의 정확한 理解를 돕기 위해 發刊된 것입니다.
- 「南北基本合意書」의 각 條項別 內容을 해설함에 있어서, 本 冊子는 民族統一의 當爲性과 法理論的 規範性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關係專門家들의 見解를 최대한 收斂, 客觀性을 유지하는 데에도 유의하였습니다.
- 本 冊子가 統一問題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에게 「南北基本合意書」의 이해를 돕는 하나의 參考資料로 유익하게 活用되기를 바랍니다.

統一政策室

《 目 次 》

I. 南北和解·協力時代의 開幕	1
II. 「南北基本合意書」의 背景 및 經過	3
1. 第6共和國의 統一努力	3
2. 統一環境의 變化	7
3. 南北高位級會談 進展過程	8
4. 合意書의 發效節次	12
III. 「南北基本合意書」의 意義	17
1. 統一推進의 「기본틀」 마련	17
2. 南北間의 自主的 合意	18
3. 北韓의 「革命」戰略 수정 및 開放 촉진	19
4.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實踐意志 구체화	20
IV. 「南北基本合意書」의 性格	22
1. 南北間의 특수한 合意	22
2. 「和解·協力段階」의 基本規範	26
3. 限時的 暫定性	28
4. 東西獨基本條約과의 比較	29

V.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의 內容	34
1. 南北基本合意書	34
가. 概 觀	34
나. 主要內容 解說	36
2. 韓半島 非核化 共同宣言	73
VI. 合意書 履行機構 構成 · 運營	77
1. 履行段階	77
2. 諸 機構의 構成 · 運營	78
VII. 向後 實踐課題와 展望	85

【 附 錄 】

□ 統一政策 관련 主要 宣言 및 合意書	
○ 「7·7特別宣言」	93
○ 제43차 유엔總會 演說	98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13
○ 南北高位級會談 開催에 관한 合意書	127
○ 第46次 유엔總會 演說	132
○ 「韓半島 非核化 宣言」	148
○ 「核不在 宣言」	153
○ 「南北基本合意書」	157

I. 南北和解·協力時代의 開幕

南北韓은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 6차 南北高位級會談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그리고 「基本合意書」의 구체적 履行과 實踐對策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發效시켰다.

그동안 정부는 脫冷戰과 和解·協力の 세계적 潮流에 따라 조성된 韓半島 統一의 유리한 環境을 남북간의 關係改善과 平和統一로 연계시키기 위한 努力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 結果, 지난 해에는 南北韓이 人類平和의 殿堂인 유엔에 함께 가입하였고 금년에는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을 발효시킴으로써 상호 和解와 協力の 길을 열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轉機를 마련하였다.

南北韓의 유엔가입이 세계를 향해 상호 實體認定을 바탕으로 한 和解와 協力を 宣言한 것이라면,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 이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南北基本合意書」 또는 「基本合意書」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非核化 共同宣言」으로 칭함.

共同宣言」은 内外의 7千萬 동포에게 和解와 協力을 約束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南北韓은 半世紀에 이르는 分斷史上 최초로 南北間의
自主的 노력에 의해 不信과 對決을 청산하고 平和와 統一을 이
루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南北聯合」의 준비단계인
「和解·協力時代」에 진입하게 되었다.

Ⅱ. 「南北基本合意書」의 背景 및 經過

1. 第6共和國의 統一努力

이번에 발효된 3개의 合意書는 제6공화국의 國政指標에 명시된 「統一 繁榮」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北方政策의 성공적 결실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이어, 한반도에 民族和解와 統一의 밝은 시대를 열어 나가는 또 하나의 歷史的 里程碑라 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盧泰愚 大統領이 “임기중인 4~5년 안에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룩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1988. 4. 21, 大統領 취임후 첫 기자회견)이라고 闡明한 이후 統一問題 解決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民族自尊과 統一繁榮」의 새시대 具現意志를 가시화 하기 위한 첫 조치는 盧大統領이 1988년 7월 7일에 발표한 特別宣言 6개항을 통해 나타냈다.

이른바 「7·7 特別宣言」은 第6共和國이 추진해 나갈 統一·外交政策의 기본방향을 闡明하고, 특히 南北關係와 北方政策에 있어 획기적인 轉換을 모색하겠다는 뚜렷한 意志와 民族共同體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政府는 美·蘇間의 緊張緩和, 88서울올림픽 등을 계기로 韓半島 주변에 和解·協力の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을 중시, 北韓을 더 이상 競爭과 對決·敵對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善意의 同伴者關係」로 포용하면서, 大局的 차원에서 民族和解와 協力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일방적 措置를 강구해 나가겠다는 實踐意志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實踐意志를 구현하기 위해 政府는 주요 政策課題로서 ①남북 상호교류와 자유왕래 ②이산가족의 서신거래와 상호방문 ③남북한 교역 문호개방 ④우방국의 대북한 교역 불반대 ⑤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협조 ⑥북한과 우방과의 관계개선 협조 등을 선언하는 한편, △남북 교육당국회담 제의 △전향적 대북외교시책 시행 △북한 및 공산권자료 개방 △대북비난방송 중지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등의 후속 實踐措置를 강구하였다.

이어서 1989년 9월 11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闡明, 民族統合의 토대위에서 國家統合으로 이행해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統一方案을 제시하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基本骨格은 ①南北對話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民

族共同體憲章」을 채택하고 ②남북의 共同繁榮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사회적·문화적·경제적 共同體 등을 형성하는 「南北聯合」을 거쳐 ③統一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國會와 統一政府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統一民主共和國」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南北聯合」은 「民族共同體憲章」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 최고결정기구로 「南北頂上會議」와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南北閣僚會議」,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南北評議會」 등의 機構를 통해 과도적 統一體制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통일민주국가”의 建設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平和統一의 달성에 필요한 國際的 環境造成을 위해 꾸준히 北方政策을 추진한 결과, 우리측 주도하에 지난해 9월에는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우리의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加入한 것은 韓半島가 국제적인 平和體制로 편입하여 국제사회에서 接觸과 協力을 넓힐 수 있는 空間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다.

盧大統領은 남북한의 유엔가입직후 가진 「平和로운 하나의 世界共同體를 향하여」라는 제46차 유엔總會 演說('91.9.24)을

통해 “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UN에 가입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이지만, 통일을 위해 거쳐야 할 중간 단계”라고 前提하고, 남북한이 유엔가입에 따른 「平和共存의 時代」를 맞이하여 해결해야 할 3개항 實踐課題로서

- △ 休戰體制의 平和體制로의 轉換
- △ 軍事的 信賴構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軍備 減縮
- △ 사람과 物資, 情報의 자유로운 交流를 추진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盧大統領은 한반도 平和統一의 커다란 걸림돌인 북한의 核武器開發을 포기케 하고 “핵의 恐怖가 없는 韓半島”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1991년 11월 8일 「韓半島 非核化와 平和構築을 위한 宣言」을 천명한데 이어, 북한의 駐韓美軍核에 대한 우려를 解消하기 위해 同年 12월 18일 「核不在宣言」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第6共和國 정부의 꾸준한 통일노력이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에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統一展開過程의 實現可能性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겠다.

2. 統一環境의 變化

최근 몇년동안 共產主義 諸國의 沒落과 동·서독통일, 그리고 蘇聯邦의 해체 등 國際情勢의 엄청난 변화는 종전의 冷戰秩序의 清算과 함께 새로운 經濟中心의 國際環境을 조성해 나가 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大變革의 물결은 이제 마지막 남은 冷戰의 유산인 韓半島 統一問題에도 새로운 課題와 機會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統一環境의 급변속에서 外交的 孤立과 深刻한 經濟難에 따른 體制崩壞의 威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의 理念的·閉鎖的 路線을 고수할 것이냐? 開放·改革의 實用主義 路線을 선택할 것이냐? 의 限界狀況에 직면해 있다.

'92년도 金日成 新年辭에서 “모든 사람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려는 인민의 세기적 염원을 실현하는 것”이 當面目標라고 강조한 사실만 보아도 北韓의 이와같은 狀況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北韓이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92 김일성 신년 사)고 강변하고 있으나, 北韓社會도 變化의 물결에 따라 이미

思想統制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북한이 「基本合意書」의 채택에 呼應해 나온 것은 이와 같은 周邊情勢 變化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제 자체가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解消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당면 현안과제인 對日修交와 對美接近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方便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南北高位級會談 進展過程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 등은 그동안 남북쌍방이 8회의 豫備會談과 6회의 高位級會談 및 13회의 관련 實務代表 接觸 등을 통해 도출해 낸 값진 성과라 하겠다.

애당초 南北高位級會談은 1988년 12월 18일 강영훈 총리가 북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에게 보낸 書翰을 통해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개최하자고 提議하였고, 이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총리가 「南北高位 政治·軍事會談」개최를 수정·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豫備會談 개최를 수락함에 따라 성립되었다.

그동안 남북 쌍방은 1989년 2월 8일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 豫備會談을 시작으로 8차례에 걸친 豫備會談을 통해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

시하는 문제」를 議題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을 성사시켰다.

그 후 1990년 9월 4일부터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되었으며, 수차의 우여곡절끝에 제 4차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單一文件을 채택할 것과 합의서의 內容體系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어, 제 5차회담에서는 合意書 내용에 대한 異見을 해결하고 文案整理까지 완료함으로써 쌍방 總理間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採擇·署名한 것이다.

이같은 合意書 채택과정에서 우리측은 南北關係 改善과 평화 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南北當事者 解決原則」, 「實踐性 保障의 原則」, 「和解의 原則」등 3대 원칙이 관철되도록 노력 하였으며, 각 條項과 文案의 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우리측의 立場을 최대한 반영시켰다.

첫째,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전환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측 案대로 남과 북이 當事者임을 명백히 하였음은 물론, 平和狀態가 정착될 때까지 현 軍事停戰協定을 준수한다는 사실도 명기토록 하였다.

둘째, 「常設連絡事務處」설치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를 우선 판문점에 설치하되 앞으로 서울과 平壤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의 立場을 고려하여 명칭을 「南北連絡事務所」로 조정하고 합의서 발효후 3개월이내에 판문점에 설치기로 합의하였다.

세째, 不可侵 境界線問題는 海上境界線을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現狀變更의 불씨를 제거해야 한다는 우리측 立場에 따라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찰해 온 구역”으로 최종 同意하였다.

네째, 不可侵 履行保障措置 문제는 당초 우리측이 구체적인 軍事的 信賴構築措置를 獨立條項으로 명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측이 이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南北軍事共同委員會」가 協議·推進토록 절충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대규모 部隊移動 및 軍事訓練의 사전 통보, 非武裝地帶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및 軍事情報의 교환, 大量殺傷武器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軍縮實現 및 檢證을 명시해야 한다는 우리측 立場을 관철시켰다.

다섯째, 언론매체 및 출판물의 相互開放과 交流問題는 우리측이 북한측 立場을 감안하여 相互開放을 양보하는 대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보도, 출판분야의 교

류와 협력”으로 明示하였다.

여섯째, 통행, 통신, 경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문제는 南北 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 부문별 共同委員會를 합의 서 發效後 3개월 이내에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交流協力 실천 기구를 두자는 우리측 立場을 관철시켰다.

일곱째, 合意書와 他 條約과의 관계 문제는 쌍방간에 意見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合意書의 조항으로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우리측은 5차회담의 閉會發言을 통해 일반 國際法의 원칙에 따라 合意書가 기존 條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두었다.

특히 우리측은 북한측이 不可侵에 합의해 놓고도 平和를 위협하는 核武器를 개발하거나 核査察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非核化 등에 관한 共同宣言(안)」을 제시하였고,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代表接觸을 갖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核問題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問題解決 노력에 대해 북한측은 盧大統領의 「非核化宣言」을 핵문제에 대해 일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爭點事項이었던 우리측의 「南北連絡事務所」 설치·운영 제의를 수용하였으며, 交流協力部門에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분야의 협력·교류”를 명

시하고, 「北南經濟協力共同委員會」 설치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역사적인 「基本合意書」가 채택되었다.

「基本合意書」, 「非核化 共同宣言」, 「分科委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의 3개 문건을 발효시킨 제 6 차회담에서는 각 分科委 運營問題 등에 합의하고 分科委 1차회의를 3월중에 각기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6차회담에서 分科委 구성이전이라도 70세 이상 高齡이산가족의 故鄉訪問을 우선 실시할 것과 5차회담 이후의 대표접촉을 통해 쌍방이 협의한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示範 核査察問題 등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서 이행의 先決問題로써 주한미군 철수, 군축실현, 방북구속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함으로써 問題解決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4. 合意書의 發效節次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은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각기 필요한 節次를 거친 文本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정식 發效하게 되었다.

合意書 발효와 관련하여 「基本合意書」 제25조와 「非核化 共同宣言」 제 6 항에 “남과 북이 각기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국제법상 正式條約(formal treaty)에는 조약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認證節次」와 조약의 「拘束을 받겠다는 同意表示」의 두 段階를 거치는 것이 通例이다.

條約文의 認證節次는 서명으로 하고,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表示는 批准(ratification), 受諾(acceptance), 認准(approval), 加入(accession) 등의 방법에 의한다.

裁可·批准·受諾 및 認准은 모두 條約締結權者가 全權代表들에 의하여 서명된 條約을 확인하고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同一하나, 나라에 따라서는 認准과 受諾이 비준보다 간단한 경우가 흔히 있다.

한편, 略式條約(agreement in simplified form)의 경우에는 署名만으로 조약문의 「認證節次」와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表示」의 두 단계 행위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

이러한 略式條約은 署名만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國會의 同意를 받지 않으며 비밀이나 긴급성을 요하는 停戰協定이나 美國에서 발달한 行政協定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 憲法 제60조 1항에 의하면, 國會는 상호원조 또는 安全 保障에 관한 조약,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조약, 友好 通商 航海 조약, 主權의 제한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負擔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비준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그러므로 國會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條約은 일반적으로 正式條約이며 그중에서도 國民의 權利·義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이 대부분이다.

이번에 발효된 「基本合意書」는 서문에서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 雙方關係를 「暫定的 特殊關係」라고 확인하였다.

「基本合意書」는 全權代表들인 雙方總理가 署名하고 난 후 條約締結權者인 大韓民國 大統領과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主席의 최종 재가를 거쳤으나, 국회의 批准同意를 요하는 「國家間의 正式條約」이라기 보다는 分斷國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政治實體間에 이루어진 특수한 성격의 合意書이다.

우리 憲法은 大統領이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의

무를 지도록 규정(제66조 3항)하고 있으며, 大統領의 취임선서문(제69조)에도 조국의 平和的 統一努力에 대한 규정을 돕으로써 統一政策 推進을 大統領의 權限으로 하고 있다.

政府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國民的 合意를 토대로 「基本合意書」상의 발효절차에 상응하는 所定の 節次를 완료하였다.

우선 政府는 헌법 제88조 1항에 따라 國務會議의 심의를 거쳐 1992년 2월 17일 大統領의 國法上 行爲인 최종 裁可를 마쳤고, 동 裁可文書는 國務總理와 全 國務委員이 副署하였다.

이에 앞서 政府는 「基本合意書」가 국가와 국가간에 체결된 일반적인 「國際條約」은 아니지만, 향후 南北關係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에 특별보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基本合意書」에 합의한 직후인 1991년 12월 16일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鄭元植 國務總理가 國會本會議에 참석하여 직접 報告하였으며, 같은 날 崔浩中 副總理 겸 統一院長官이 국회 外務統一委員會와 統一政策特別委員會 合同會議에서 관련 세부사항을 보고하였다.

또한 平和統一政策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자문기관인 民主平

和統一諮問會議 常任·運營委員會 合同會議를 개최, 副總理 兼 統一院長官이 報告하고 질의·응답하는 계기를 통하여 國民의 意思를 최대한 수렴토록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1년 12월 24일 黨中央委員會 제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연형묵 정무원 총리가 報告를 하였고, 입법기관인 最高人民會議를 소집하는 대신에 12월 27일 中央人民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聯合會議를 소집하여 이를 약식 승인하였으며, 발효직전에 金日成(主席)이 이를 최종적으로 「批准」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에서 「批准」의 의미는 「현대조선말사전」(’88)에 明記되어 있듯이 “단위책임자나 일정한 기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하거나 확인하는 것”이므로 條約締結權者인 國家主席의 「承認」 또는 「裁可」를 의미하며, 國際法上 國家間 조약체결과정에 있어서 「批准」의 개념과는 다르다.

Ⅲ. 「南北基本合意書」의 意義

1. 統一推進의 「기본틀」 마련

「基本合意書」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過程으로 전제, 南北關係改善과 平和統一을 향한 「기본틀」을 提示하고 있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意義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 結果로서의 統一을 명분으로 하여 공세를 취해온데 반해, 한국은 統一政策의 일차적 목표를 南北和解·協力과 平和體制 구축에 두고, 이를 위한 꾸준한 努力을 경주하여 왔다.

즉, 서로 다른 體制와 理念으로 인해 민족적 이질화가 심화되고 남북이 상호 不信·反目하여 온 현실상황에서 自由·人權·幸福이 보장되는 統一民族國家를 하루 아침에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우리는 그동안 단계적인 統一政策을 수립·추진해 왔던 것이다.

이에따라 「基本合意書」는 序文에서 현재의 南北韓關係를 통일과정의 「暫定的 特殊關係」라고 규정, 南北韓이 당장 통일을 이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서로 상대방의 體制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破壞·顛覆하지 않으며, 교류·협력

을 통해 民族同質性을 회복함으로써 단계적으로 統一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는 약속을 內外에 천명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基本合意書」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은 이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밝히고 있는 「南北聯合」을 이룩하기 위한 준비단계인 「和解·協力段階」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2. 南北間의 自主的 合意

「基本合意書」는 7천만 온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第三者의 개입없이 남북간의 공개적 協議를 거쳐 채택·발효된 최초의 公式 合意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基本合意書」는 쌍방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책임있는 當局間의 회담을 통해 현 分斷狀況을 우리민족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意志와 可能性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基本合意書」는 그 形式과 節次, 內容면에서 「7·4 南北共同聲明」과는 달리 공개적인 협의를 거쳤고 南北韓의 정식 國號와 署名者의 職銜을 명시하였으며 실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節次와 內容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基本合意書」는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제10조)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문제의 當事者 解決原則을 천명한 것으로서 이제 남북한이 周邊環境 變化를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韓半島 統一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礎石을 마련하게 되었다.

3. 北韓의 「革命」戰略 수정 및 開放 촉진

「基本合意書」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民族內部 特殊關係라고 인정하고 제1조에서 상호 相對方의 體制를 認定·尊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署名欄에서는 남북한의 정식 國號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南北韓이 상호 體制認定·尊重을 약속했다는 사실은 상대방을 國際法上 완전한 「國家」로 인정함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實體性」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基本合意書」가 발효된 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진다면, 「南朝鮮解放」논리에 입각한 북한의 기존 對南戰略이 修正되고 우리의 平和統一 政策基調에 입각한 統一過程이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

북한이 직면한 對內外 정책상의 戰術的 變化必要性에 따라 「基本合意書」 채택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호 체제의 인정·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존의 對南革命路線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基本合意書」에는 남북간의 人的·物的 교류와 협력이 강조됨으로써 政治·軍事問題 해결 우선론을 고집하여 온 北韓의 立場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民族內部的 交流·協力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開放과 變化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意義가 크다.

4.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實踐意志 具體化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核開發 疑惑으로부터 야기된 韓半島 核問題는 남북한의 平和와 統一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東北亞 安全과 世界平和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民族의 生存이 걸린 核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盧大統領의 제46차 유엔總會演說 ('91.9.24)을 비롯해 「한반도의 非核화와 平和構築을 위한 宣言」('91.11.8), 「核不在宣言」('91.12.18)등 한반도 非核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왔다.

「基本合意書」에는 南北軍事共同委員會가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協議·推進토록 규정(제12조)하고 있는 바, 「大量殺傷武器」에는 核武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는 남북간의 合意에 따라 최근 세계적 關心事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核武器 開發을 저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非核化 共同宣言」은 南北韓이 核武器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配備, 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約束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韓半島를 핵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나아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 相互査察을 실시하며 同 方案을 협의하기 위해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를 구성키로 합의하였다.

核問題 해결을 위한 남북간의 이와같은 合意는 「基本合意書」의 武力侵略 반대(제9조)와 紛爭의 平和的 解決(제10조)의 규정과 함께 한반도 平和定着과 平和統一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IV. 「南北基本合意書」의 性格

1. 南北間의 특수한 合意

「基本合意書」는 서문에서 남북관계를 「國家關係」가 아닌 「暫定的 特殊關係」로 규정함으로써 합의서의 性格이 일반 국가간의 「條約」이 아니라는 점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基本合意書」는 序文, 條文配列, 정부대표의 署名, 發效節次 등 국제법상 條約에 준하는 形式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條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基本合意書」의 이와 같은 2중적 성격때문에 합의서의 條約性 및 國會同意 필요성 여부, 國內法制와의 관계 등에 관한 論難이 제기되고 있다.

1969년 「條約法에 관한 비엔나協約」(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과 1986년 「國家와 國際組織間 및 國際組織 상호간에 체결된 條約法에 관한 유엔協約」등을 종합해 볼 때, 국제법상 條約의 의미는 그 名稱 여하에 불구하고 국제법 주체간 권리·의무의 發生·變更·消滅을 내용으로 하고 法的 拘束力을 갖는 합의이다.

국제법상 條約을 체결할 수 있는 主體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조직, 교전단체, 分斷國을 구성하는 政治實體 등 國家類似 團體도 포함된다.

오늘날 條約의 範圍에는 국가와 국제조직을 포함하여 조약체결능력을 가진 國際法 主體間에 체결된 법적 구속력있는 書面 合意가 모두 포함되는 바, 이러한 의미에서의 條約을 「廣義의 條約」이라고 한다.

廣義의 條約에는 조약(treaty) 뿐만 아니라,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venant), 헌장(charter), 규정(statute), 결정서(act), 의정서(protocol), 합의의사록(agreed minute), 선언(declaration), 교환공문(exchange of notes), 잠정협정(modus vivendi)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國際法 主體間의 書面合意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반하여 狹義의 條約은 예컨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처럼 廣義의 條約중 「條約」(treaty)이라는 명칭을 특별히 사용한 國際法 主體間의 書面合意를 말한다.

이같은 國際法上的의 條約에 관한 정의를 「基本合意書」에 적용해 볼 때, 「基本合意書」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국가간의 조약은 아니나, 分斷國을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政治實體 즉, 국제법 주체간에 적법하게 이루

어진 當局間 合意이다.

어떠한 合意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유효하게 成立·發效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진정한 意思合致가 필요하다. 이러한 意思合致의 요건으로는 ① 조약당사자가 條約締結能力(capacity)을 가질 것, ②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을 체결할 것, ③ 조약체결권자가 조약체결을 위하여 임명한 대표자(全權代表)간에 瑕疵 없는 合意(consent)가 성립할 것, ④ 조약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것을 客體(object)로 할 것, ⑤ 일정한 條約成立(締結) 절차를 완료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南北基本合意書」의 경우, ①②③④의 要件을 충족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分斷國을 구성하는 두 政治實體이기는 하나 각기 유엔회원국으로서 100여개를 상회하는 國家들과 수교하고 있고, 국제법상 다양한 法律行爲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은 條約締結能力을 가지고 있다.

둘째, 「基本合意書」는 우리憲法(제73조)상 조약체결권자인 大統領과 北韓憲法(제96조)상 條約締結權者인 主席이 최종적으로 재가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南北韓의 條約締結權者가 합의한 公式文書이다.

다만 合意書 채택과정에서 그 全權이 남북한 總理에게 각각 위임되어 「基本合意書」에 서명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7.

4 南北共同聲明과 달리 남북을 대표하여 쌍방 總理가 全權을 가지고 合意書에 서명한 것이다.

셋째, 「基本合意書」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條約締結의 권한을 가진 대표자간에 瑕疵없는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基本合意書」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公開적으로 이루어졌으며, 詐欺·強迫 등의 瑕疵없이 적법하게 양측 의사가 합의된 문서이다.

넷째, 條約의 내용 자체가 實現可能하고 적법한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바, 「基本合意書」의 내용은 쌍방이 준수의사를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다만, ⑤ 일정한 條約成立節次의 완료 문제가 논의의 對象이 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憲法慣行에 의하면 국회의 批准同意는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條約에 대해서만 행하여져 왔다.

따라서 이번 「基本合意書」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暫定的 特殊關係」라고 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國家間」 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국가간 조약 締結節次인 국회의 批准同意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基本合意書」를 일반적인 「國際條約」으로 취급할 경우, 쌍방의 잠정적인 「特殊關係」를 두개 국가간의 「一般關係」

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南北關係에 부정적 結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基本合意書」가 남북관계를 民族內部的 特殊關係로 규정한 것은 南北韓이 제각기 상대방을 國家로 承認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基本合意書」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南北韓이 상호 묵시적인 「國家承認」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特殊關係 규정은 분단의 固着化, 永久化를 피하고 민족의 再統一을 추구하는 강력한 統一意志와 熱望을 반영한 것이다.

2. 「和解·協力段階」의 基本規範

「基本合意書」는 남북한이 統一의 개념을 하나의 實踐過程으로 파악, 통일의 방법은 段階的 接近方法이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統一方法의 틀을 설정했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

統一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은 여러가지 類型을 상징해 볼 수 있으나, 과도기적인 「平和體制」와 정치적 통일에 의한 「民族統一段階」로 나눌 수 있으며, 「平和體制」는 다시 「南北聯合」이 制度化되는 단계와 그 以前段階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통일단계별 國家形態와 각 단계를 규율하는 基本規範을 다음

과 같이 나누어 볼 때, 「基本合意書」는 統一을 향한 과정의 제 1 단계인 남북한간의 「和解·協力段階」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基本規範이라고 할 수 있다.

[統一段階別 基本規範과 國家形態]

段 階	基本規範	國家形態
和解·協力	基本合意書	分斷國家
平和體制	民族共同體憲章	南北聯合
民族統一	統一憲法	統一國家

따라서 「基本合意書」는 제 2 단계인 平和體制的 기본규범인 「民族共同體憲章」과 그 성격을 달리함은 물론, 제 3 단계인 統一國家의 기본규범인 「統一憲法」과도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和解·協力段階」는 남북한이 정치적·군사적 對決狀態에서의 상호 不信과 反目を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民族的 和解를 이룩하며, 다각적인 諸分野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쌍방의 體制와 理念의 격차를 줄여나가면서 民族共同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해 나가는 過程이다.

이런 점에서 「基本合意書」는 장차 「民族共同體憲章」이 마련될때까지 남북간의 和解·軍縮·交流協力を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基本規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基本合意書」에 기초하여 만들어질 각 분야별 「附屬合意書」는 당연히 「基本合意書」의 基調와 內容의 테두리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3. 限時的 暫定性

「基本合意書」는 서문에서 현 남북관계가 統一을 지향하는 過程에서의 「暫定的 特殊關係」라고 규정하고 있어 分斷實體로서의 남북간에 적용되는 특수한 合意文書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基本合意書」는 내용상 效力期間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 성격상 상기한 바와 같이 「和解·協力段階」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南北聯合」형성, 또는 統一國家형성 이전까지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일종의 「暫定協定」(modus vivendi)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暫定協定」이라 함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雙方이 과도적으로 상호 協力關係를 맺는 約束으로, 국제법상 紛爭解決을 위하여 당사자간에 편의적으로 체결하는 暫定的인 協定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추후 永續的이고 詳細한 協定으로 대체되는 것이 通例이다.

「和解·協力段階」를 거쳐 「南北聯合」이 형성되게 되면 「基本合意書」는 효력을 상실하고 「南北聯合」의 基本規範인 「民族

共同體憲章」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다만 統一國家 형성시까지 「基本合意書」의 효력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民族共同體憲章」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또는 「基本合意書」를 개정하여 「基本合意書」내에 그의 효력을 연장시키는 條項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4. 東西獨基本條約과의 比較

가. 性格上的 差異

前述한 바와 같이 「基本合意書」는 통일을 지향한 「和解·協力」의 段階를 규율하는 南北韓 사이의 基本規範이다. 그러나 東西獨基本條約은 「平和共存」 단계를 규율하는 동서독간의 基本規範이다.

이 점에서 兩者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南北韓間의 통일의 과정을 「和解·協力」, 「平和體制」, 「統一國家」의 3단계로 구분할 경우 동서독은 이를 「平和共存」, 「統一國家」 2단계로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東西獨基本條約이 「平和共存」을 위한 基本規範이라는 점은 同條約이 “동등 자격의 바탕위에서 상호 정상적인 선린관계를 증진한다”고 규정한 것과(제1조) “각기 두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존중한다”고 規定(제6조)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基本合意書」가 「和解·協力」을 위한 基本規範이란 점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서문),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제 5 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며”(제 3 조)라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 軍事的 信賴造成을 위한 規定(제12조)을 두고 있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나. 條約性 與否

「基本合意書」가 국가와 국가간의 條約이 아니란 점은 명칭 자체를 「條約」이라 표시하지 않고 合意書의 서문과 본문의 문안에 「大韓民國」 또는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이란 公式國號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東西獨基本條約이 국가와 국가간의 條約이란 점은 東西獨基本條約 스스로가 그 명칭을 「條約」(Vertrag)으로 표시하고 있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동서독 중 어느 한 국가도 다른 국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제 4 조), 前文과 本文에 동서독을 각기 정식 국호인 「獨逸聯邦共和國」(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과 「獨逸民主共和國」(di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으로 표시하여 각기 상대방을 國家로 보는 規定을 두고 있다.

또한 “양국의 주권을 각기 그들 자신의 국가에 국한시킨다.”

고 하는 등 相對方을 국가로 본다는 규정을 반복하고 있다. 東西獨基本條約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西獨은 東獨의 국가적 實體性을 인정하되 「外國」으로는 보지 않으려고 했으나, 동독은 서독을 「外國」으로 보고, 東西獨基本條約을 국제법상 완전한 국가간의 條約으로 보아 왔다.

西獨聯邦憲法裁判所는 東西獨基本條約의 성격에 대하여 內部關係를 규율하는 國際法上 條約이라고 判示하였다.(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36집, 1권)

다. 內容上의 差異

「基本合意書」의 내용은 전체로 보아 「和解와 協力에 관한 事項」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東西獨基本條約은 동서독의 主權平等에 입각한 善隣關係의 증진 즉, 동서독의 「平和 共存에 관한 事項」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基本合意書」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東西獨基本條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중 중요한 것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基本合意書」는 남북관계를 「特殊關係」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東西獨基本條約은 쌍방을 각각 國家로 보는 여러 규정(제 6 조, 제 10 조 등)을 두고 있다.

둘째, 「基本合意書」는 현 停戰體制를 平和體制로 전환하는 문제에 관한 규정(제 5 조)을 두고 있으나, 東西獨基本條約은 동서독간에 戰爭을 겪은 바 없으므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基本合意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東西獨基本條約에 규정되어 있는 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東西獨基本條約은 一方의 他方 不代表의 원칙을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양 국가의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다른 국가를 대리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원칙에 합의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제 4 조).

그러나 「基本合意書」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東西獨基本條約이 一方의 他方 不代表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平和共存」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이 원칙은 國際法上 二分斷體의 國家性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이른바 「할슈타인原則」(Hallstein Doctrine)을 포기한 것이다.

「基本合意書」가 一方의 他方 不代表의 원칙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남과 북이 서로 相對方을 국가로 承認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東西獨基本條約은 쌍방이 既締結한 제 3국과의 조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兩立條項」(compatibility clause)에 관한 규정(제 9 조)을 두고 있으나 「基本合意書」에는 이러한 「兩立條項」이 없다. 대부분의 東西和合에 관한 조약은 兩立條項을 두는 것이 通例이다.

단지 獨逸統一과 관련한 1990년 8월 31일의 「獨逸統合條約」 제12조에서는 “통독과정이 진행중인 현재 동독측의 국제법상 조약들은 조약체결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계속 유효, 조정 또는 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 또는 확인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兩立條項」을 排除한 예외적인 事例도 있다.

V. 「南北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의 內容

1. 南北基本合意書

가. 概 觀

「南北基本合意書」는 서문과 함께 南北和解(제 1 장), 南北不可侵(제 2 장), 南北交流·協力(제 3 장), 修正 및 發效(제 4 장) 등 4장 25개조로 構成되어 있는데, 그 주요한 內容은 대략 다음과 같다.

序文에서는 남북한이 平和統一을 성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하고 있으며, 南北關係가 통일지향의 暫定的 特殊關係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 1 장에서는 南北和解에 관한 實踐課題(제 1 조~6조)를 제시, 분단 47년동안 남북사이에 쌓여진 不信과 對決의 장벽을 헐고, 民族成員 상호간에 和解와 信賴를 쌓아 나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不可侵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約束을 내외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實踐措置(제 9 조~13조)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제 2장에서 「南北軍事共同委員會」가 앞으로 협의·추진해 나갈 實踐課題를 열거하면서(제12조) 단계적 軍縮實現 문제의 하나로서 「大量殺傷武器와 攻擊能力의 除去」를 제시하고 있다.

「大量殺傷武器」란 개념속에는 化學武器, 生物學武器와 함께 核武器를 포함하는 것으로 南北間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基本合意書」에 남북간의 최대현안인 북한의 核開發 저지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일부 輿論은 本旨를 잘못 이해한데서 기인된 것이다.

제 3장에서는 남북간에 經濟交流와 協力, 사람들의 往來와 接觸, 기타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에 관한 규정(제 15조~21조)을 두고 있다.

제 3장은 남북 쌍방간의 經濟交流와 協力の 목적이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を 非經濟分野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人的 交流에 있어서는 1千萬 離散家族을 비롯한 전체 민족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유로운 南北住民(‘주민’을 북측의 반대로 합의서에서는 ‘民族構成員’으로 표기)간의 자유로운 왕래뿐만 아

나라 離散家族의 生死確認과 再結合 등 人道的 問題解決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끊어진 鐵道·道路, 郵便·電氣通信의 設置·連結 및 郵便·通信交流의 비밀보장(제19~20조)에 합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協力과 對外共同 진출(제21조)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도 「基本合意書」에는 합의내용의 履行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실천기구(分科委員會, 共同委員會, 連絡事務所 등)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2~3개 항씩 설정하고 있다.

나. 主要内容 解説

名 稱

[南과 北, 相對方]

「基本合意書」의 정식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合意書 名稱에서 「남북사이」로 표현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이 「基本合意書」의 채택으로 남과 북이 상호 國家承認을 한 것이 아니라는 意味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基本合意書」 본문에는 「남과 북」으로 표기하면서도 서명란에 정식 국호를 明記하고 있는 것은 「基本合意書」의 채택당사자는 남북한이며 「基本合意書」 이행과정에서의 행위주체가 南北韓 政府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南」은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을 사실상 管轄·統治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大韓民國」을 의미하고, 「北」은 한반도 軍事分界線 이북을 사실상 管轄·統治하는 정치적 실체로서의 北韓을 의미한다.

「相對方」의 개념은 남한의 경우 사실상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府」가 관할·통치하는 인적·물적 영역, 북한의 경우 「大韓民國 政府」와 그 인적·물적 관할영역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남과 북 및 相對方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政府當局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分野別·事案別로 非當局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다.

[合意書]

「基本合意書」가 그 명칭을 「憲章」, 「宣言」, 「聲明」, 「章典」 등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合意書라고 표시한 것은 단순한 「政策의 宣言」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그 實踐意志를 강조하기 위한 「規範」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다.

「基本合意書」가 규범이라는 것은 「基本合意書」의 명칭 이외에 조항별로 된 形式과 內容, 그리고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諸般節次(제25조) 등으로 보아 명백하다.

序 文

「基本合意書」에는 서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서문에는 「前文」인 경우와 「公布文」인 경우가 있다. 公布文은 법의 명칭앞에 게재되며 前文은 그 뒤에 게재된다. 「基本合意書」의 서문은 「基本合意書」명칭 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公布文」이 아닌 「前文」이다.

前文은 그 법의 제정 유래, 基本精神과 原則 등을 선언한 것으로서 그 법의 일부를 형성하고 각 條項의 해석기준이 된다.

[祖國統一 3大 原則의 再確認]

序文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宣言하고 있다.

「7·4南北共同聲明」에 표시된 「政策의 宣言」으로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基本合意書」에 민족의 통일추진 원칙으로서 再闡明되었다.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祖國統一 3대 원칙은 「自主統一의 原則」, 「平和統一의 原則」, 「民族大團結의 原則」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

「基本合意書」序文에서 이러한 규정을 宣言한 것은 남북한이 화해·협력을 통한 民族共同體 회복과 平和定着을 이룩하고, 궁극적으로 統一에 접근하려는 基本構想을 반영한 것이다.

화해·협력을 통한 平和定着을 목표로 한다면 남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祖國統一을 위해서는 이에 역행·모순되는 國家의 承認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基本合意書」는 평화정착만을 목표로 하고 統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南北韓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暫定的 特殊關係로 규정한 것이다.

「基本合意書」에서 「特殊關係」에 대한 개념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立場에서 볼 때, 「特殊關係」란 「中央的 法律上의 政府(central de jure government)」로 구성되는 大韓民國과 「地方的 事實上의 政府(local de facto government)」로 구성되는 政治實體인 북한의 관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規定이 우리 憲法 제 3 조의 領土條項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第1條 : 體制 認定 · 尊重

「基本合意書」 제 1 조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基本合意書」 제 1 조에만 「體制」라는 용어(북측 합의서 문안에는 「制度」로 명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定義規定이 없다. 그러므로 體制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한 解釋의 문제가 제기된다.

體制는 「實體」(entity)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政治制度의 권력구조 또는 憲法秩序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基本合意書」에 있어서의 「體制」는 이념 · 제도 · 정권 · 인적 구성 등을 포괄하는 綜合的인 개념으로서 남북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제도와 政治的 實體(政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體制의 認定 · 尊重은 남북쌍방이 상대방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제도를 認定 · 尊重하는 동시에 南北政府의 실질적 管轄權을 인정 · 존중한다는 것으로, 이는 남북한 政府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一次的 當事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體制認定 · 尊重이 국제법상 國家承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序文에 남북관계를 「特殊關係」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상호 體制認定 조항을 설정한 것은 남북이 상대방을 國際法上

國家로 承認하지 않으면서도 事實上的 政治的 實體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認定·尊重」은 對外的 인정·존중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對內的 인정·존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對外的·對內的 인정·존중의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제 2 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대방의 內部問題 不干涉의 原則을 고려해 볼 때, 여기의 「認定·尊重」은 對外的 인정·존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對內的 인정·존중은 제 2 조의 상대방의 內部問題에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영, 보다 具體化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認定·尊重」은 對外的 인정·존중을 뜻하며 對內的 인정·존중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 相對方의 체제를 반영한 實定法을 對外的으로 인정·존중하여야 하나, 對內的으로 상대방의 實定法을 인정·수용해야 할 義務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立場에서 볼 때 「基本合意書」 제 1 조의 규정에 따라 북한의 社會主義體制를 대외적으로 용인해야 하나, 이를 對內的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국내법을 개정해야 한다든가, 국내에서의 共產主義 活動의 認定과 合法化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第 2 條

: 內部問題 不干涉

「基本合意書」 제 2 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內部問題 不干涉의 原則」을 명문화하였다. 일반 國際法上 모든 국가는 「國內問題 不干涉의 原則」에 따라 他國의 국내문제에 干涉할 수 없다.

「基本合意書」는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을 國家로 보지 않으므로 국가를 전제로 한 일반 國際法上 원칙인 「國內問題 不干涉의 原則」은 남과 북사이에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남북한이 國際聯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基本合意書」가 쌍방관계를 국가간 관계가 아닌 特殊關係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연합 회원국간의 「國內問題 不干涉의 原則」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基本合意書」에 內部問題 不干涉의 原則을 규정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內部問題]

국제법상 「國內問題」는 대내·대외적으로 國家의 배타적 관할에 속하는 사항 즉, 國家가 단독·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排他的 管轄權에 속하는 사항으로는 대내적 문제로서 政治制度 선택, 國籍賦與, 軍備規模 결정 등을 들 수 있고, 대외적인 外交問題로는 관세·이민, 쌍무

적 軍事安保協力體制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國際聯合憲章 및 國際慣行에 따라 國際平和 및 人權에 관한 사항인 북한의 核武器 개발, 人權問題 등은 인류의 공동문제로서 內部問題가 아니다.

반면, 北韓이 우리에게 상호 體制認定·尊重原則에 반하는 國家保安法 철폐, 密入北者 석방, 팀스피리트訓練 중지, 美軍撤收, 共産黨 合法化 등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國內問題에 준하는 것으로 內部問題 干涉에 해당한다.

[干 涉]

「干涉」이란 국제법 주체가 국제법상 權源없이 一方의 의사를 他方에게 他方의 의사에 반하여 強制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강제의 方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어느 一方이 타방의 內部問題에 개입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干涉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한 勸告나 提議, 또는 抗議는 간섭이 아니다.

干涉의 유형에는 무력시위·武力行使·봉쇄 등에 의한 軍事的 干涉, 반정부 소요·暴動煽動·태업 등에 의한 政治的 干涉, 관세조작·輸入規制·재산동결·외환조작 등에 의한 經濟的 干涉이 있으며, 他方의 의사에 強制的 效果를 미치는 것이면 모

두 干涉이 된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美國의 개입 등 條約規定에 의한 간섭, 國際法 違反에 대한 간섭, 자국민 보호 등 自衛를 위한 간섭, 상대측 政府의 要請에 의한 간섭, 國際原子力 機構(IAEA)의 강제 核査察 등 유엔 및 국제기구 決議에 의한 集團的 간섭, 집단살해에 대한 人道的 간섭 등은 國際法上 合法的 干涉으로 간주되고 있다.

第3條·第4條	:	誹謗·中傷 중지, 破壞·顛覆行爲 금지
---------	---	----------------------

「基本合意書」 제 3 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 4 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상호 誹謗·中傷의 중지와 破壞·顛覆行爲의 금지는 상대방의 體制認定·尊重을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다.

[誹謗·中傷]

「誹謗·中傷」은 정부·정당 및 政府支援團體가 공식·비공식 매체를 통해 사실을 歪曲報道하거나 過大宣傳 및 誹謗으로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훼손하고 敵對感을 갖도록 하는 諸 行爲를 말한다.

따라서 北韓이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군부파쇼”, “미제식민지” 등의 표현은 誹謗·中傷에 해당되어 「基本合意書」 제 3 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人權問題 실상 보도 및 개선 요구,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 實相에 대한 學問的 批判, 개방·개혁 권고, 상대방 統一方案에 대한 이론적 批判 등 남북간의 民族同質性 회복이나 國際舞臺에서의 自矜心 양양 등을 위하여 행해지는 善意的 批判·批評行爲는 비방·중상으로 볼 수 없다.

[破壞·顛覆]

「破壞·顛覆」은 상대방 체제를 攪亂·瓦解할 목적으로 사전 계획된 폭력·비폭력의 諸 手段을 동원한 물리적 威脅行爲를 말한다.

여기에는 간첩파송, 무장공비 침투, 요인암살, 테러, 선박·항공기의 납치, 주요시설 폭파 등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相對方의 체제를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行爲와 비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體制威脅 행위, 즉 反政府團體나 국제 테러집단에 대한 자금 및 편의제공, 反政府團體·勢力에 대한 鼓舞·支援 활동, 선전선동적 편지공세, 불온전단 살포 등도 破壞·顛覆 行爲에 해당되어 「基本合意書」 제 4 조의 규정에 의해 禁止된다.

第 5 條

: 現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轉換

「基本合意書」 제 5 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남과 북이 상호 不信과 反目을 해소하고 和解·協力の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現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전환이 絶실히 要求된다.

[現 停戰狀態]

국제법상 戰爭狀態는 사실상 敵對行爲 또는 宣戰布告로 시작되어 平和條約의 체결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停戰協定이 체결되어 敵對行爲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도 그 상태는 戰爭狀態이며 평화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1953년 7월 27일에 「停戰協定」이 체결되었지만, 현재 「平和에 관한 合意」가 쌍방간에 채택되지 아니하여 아직 남북한은 戰爭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53년의 「停戰協定」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他方으로 하여 서명되었다. 따라서 停戰協定의 署名當事者는 국제연합과 북한

· 중국이며 大韓民國은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停戰協定の 서명당사자는 아니지만 한국은 전쟁의 主交戰國이며 당시 국제연합군사령관에게 作戰權을 이양하였는 바, 국제연합군사령관은 국제연합뿐만 아니라 韓國을 대리하여 停戰協定에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 당연히 停戰協定の 法的 當事者로 볼 수 있다.

또한 停戰協定 제60항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 회담을 휴전후 3개월내에 소집한다”는 規定과 유엔總會 결의 (1953. 8. 28) 및 베를린 美·英·佛·蘇 外務長官 회담(1954. 2. 28)에 의거, 한국은 이미 제네바 政治會談(1954. 4. 26~6. 15)의 當事者로 참가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은 停戰體制를 平和體制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政治會談의 當事者 자격을 당연히 가지며, 이점은 北韓이 1974년 3월 25일 朝·美平和協定 締結을 위한 회담을 提議하기 이전의 각종 提案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예컨대, 1973년 4월 5일 당시 정무원총리 金日의 대남제과의와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祖國統一 5大 綱領」에서 북한은 남북간의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國際聯合과 북한·중국간의 현 停戰狀態

또는 남과 북간의 현 停戰狀態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現 停戰狀態」라고 표시한 것은 경우에 따라 전·후 양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어쨌든 현 停戰狀態를 平和狀態로 전환하여 和解·協力の 기반을 조성하려는 동 제 5 조의 趣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南北사이의 공고한 平和狀態]

현 停戰狀態를 「남북사이의」 平和狀態로 전환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현 停戰狀態가 國際聯合과 북한·중국간의 상태이든 남과 북간의 상태이든 불문하고 장차의 平和狀態는 남과 북의 平和狀態로 전환하려는 뜻이다.

환언하면, 남북사이의 平和狀態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現 停戰協定」이 「平和에 관한 合意」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 「平和에 관한 合意」는 남과 북을 當事者로 하여 체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제법상 休戰協定の 당사자와 그 후에 체결되는 平和條約의 당사자는 반드시 일치됨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慣行이다. 특히 聯合軍을 편성하여 參戰하는 경우는 休戰協定の 당사자와 平和條約의 당사자는 각기 별도로 정해지며, 양자의 當事者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通例이다.

따라서 「停戰協定」의 당사자가 國際聯合과 北韓·中國이든

國際聯合·大韓民國과 北韓·中國이든 불문하고 장차 체결될 「平和에 관한 合意」의 當事者는 「남과 북」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停戰協定」 제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서 「關係 各國政府」의 대표로 구성된 政治會談을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동 규정에 의거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는 政治會談의 개최를 권고하는 決議 [GA/Res. 711(VII)]를 채택했다.

동 決議는 「停戰協定」 제60항의 「關係 各國政府」의 범위를, 국제연합군측에 大韓民國을 포함하는 16개 參戰國, 공산군측에 북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이 원한다면 蘇聯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同 決議에 의거, 상기 國家의 정부가 참가한(남아연방 불참) 제네바 政治會談이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문제의 政治的 當事者, 즉 「平和에 관한 合意」의 당사자는 상기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의 決議에서 그 根據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現 停戰協定」을 대체하는 합의서는 상기 유엔총회의 決議에 포함되어 있는 남과 북을 當事者로 하고, 관계 국가들이 보증하는 형식으로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基本合意書」 제 5 조의 「南北사이의 平和狀態」란 남과 북을 當事者로 하고 1953년 8월 28일의 유엔총회의 決議에 포함된 관계 국가들이 보증하는 平和狀態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基本合意書」 제 5 조의 규정에 따라 北韓은 「對美 平和協定」의 체결을 더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第 6 條, 第 21 條 : 國際舞臺에서의 南北韓 協力

「基本合意書」 제 6 조는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規定하고, 제 21 조는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은 相對方을 상호 적대시하고 誹謗하는 태도를 취해 왔으나, 이제는 서로 和解하고 協力하여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國際舞臺]

「國際舞臺」란 國際組織 또는 제 3 국과 관련된 國際關係를 뜻하는 것이나, 南北韓間의 잠정적인 관계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國際聯合 또는 제 3 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는 國際舞臺

에 해당하나 南北韓 대표만이 회합하는 회의는 그 會議場所의 韓半島 内外를 불문하고 國際舞臺가 아니다.

[對決競爭의 中止와 相互協力]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의 規定은 적대적 태도와 이기적 競爭을 버리고 상호 支援·協力한다는 의미로서 國際社會에서도 상호 체제 인정·존중, 內部問題 不干涉, 비방·중상 중지 및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의 努力을 경주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外交的 對立·競爭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基本合意書」에 남과 북의 對等關係를 설정하지 않고 “공동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남과 북이 상호 相對方의 國家性を 부인하려는 뜻에서 연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分野에서의 相互 協力]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의 제21조 前段 規定은 경제,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國際機構나 國際會議에서 서로 支援·協調하고, 해당분야에서의 協力事業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對外에 共同으로 進出]

「對外」의 의미는 남측지역과 북측지역을 제외한 제3국을 포함하여 國際機構나 國際行事 등도 포함된다.

또한 「進出」의 의미는 폭넓게 해석되어 제 3국에의 合作投資, 國際機構에의 가입 지원, 국제행사의 共同主催, 국제경기에의 단일팀 구성·참가 등이 포함될 것이다.

第 9 條 : 武力行使禁止의 原則

「基本合意書」 제 9 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규정은 「武力行使禁止의 原則」을 규정한 것으로 「基本合意書」의 조항중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基本合意書」 제 5 조에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 9 조에 武力行使禁止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武力行使禁止의 규제 장치는 2중으로 되어 있다.

이미 남북한이 각각 國際聯合에 가입함으로써 國際聯合憲章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과 북은 武力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제 9 조에서 이 원칙을 쌍무적으로 再確認하였다는 데에 意義가 있다.

[武力不行使]

「武力」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威脅이나 使用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戰爭뿐 아니라 武力復仇도 해당된다. 그러나 일

체의 武力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아니며 「自衛權의 行使」나 國際聯合에 의한 「集團的 強制措置」(헌장 제 7 장)에 참여한 武力의 行使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南北韓은 국제연합의 會員國이 되었으므로 國際聯合憲章의 법적 구속을 받으며, 國際聯合憲章 제103조는 “국제연합 가맹국의 이 헌장에 의한 의무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과 북은 國際聯合憲章에 의한 自衛權의 행사와 集團的 強制措置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基本合意書」 제 9 조의 武力行使는 自衛權의 행사에 의한 武力行使와 집단적 強制措置에 의한 武力行使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986년 9월 22일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의 「스톡홀름協約」 제11조는 “무력침공이 있을 경우, 國際聯合憲章에 규정된 대로 參加國들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에 대해 본래의 權利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武力에 의한 侵略]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는 武力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領土에 침입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여기의 「武力侵略」에는 間接侵略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間接侵略은 제 4 조의 顛覆行爲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侵略(aggression)은 侵犯(invasion)으로 해석해야 한다. 국제법상 侵略은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난다. 남북관계는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侵略이란 용어는 남과 북의 관계에서는 적합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侵犯으로 해석해야 한다.

1932년의 「군축회의 안전보장위원회의 침략정의안」 제 1 조, 1933년의 國際聯盟에 제출된 소련의 「侵略定義案」 제 1 조, 1956년의 國際聯合總會에 제출된 이란·파키스탄의 「침략정의안」 제 2 조 등은 侵略과 侵犯을 구별하고 있다

1974년 12월 14일 유엔總會決議 3314(XXIX)에 의한 침략의 定義 채택에 따라 현재 유엔총회에 제기된 인류의 安全과 平和에 대한 犯罪는 침략행위, 침략위협, 무력침략 준비, 他國領土內에 무장반도 조직·고무, 他國內 내란·테러활동 조장 등 13가지이다.

第10條 : 南北間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

「基本合意書」 제10조는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紛爭의 平和的 解決原則」을 규정한 것으로, 제 9 조의 武力行使禁止의 원칙과 함께 국가간 基本條約(우호선린협조조약)이나 不可侵協定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意見對立과 紛爭]

「意見對立」은 紛爭(dispute)이전의 事態(situation)를 말한다. 그러나 一方의 요구가 아직 없거나 또는 一方의 요구가 있어도 他方の 거절이 없는 경우는 紛爭이 아니라 事態이다. 동조의 意見對立은 분쟁이전의 단계이므로 事態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紛爭」이란 국제법상의 法律關係 또는 국제정치상의 利害關係에 관한 意見衝突이라고 할 수 있다. 國際法上の 紛爭은 현행의 法律關係·權利義務關係에 입각한 분쟁인데 반해, 국제정치상의 紛爭은 현행의 法律關係·權利義務關係를 떠나서 그것의 變更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을 否認하는 분쟁이다.

紛爭은 종종 戰爭이나 武力使用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남북간의 平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紛爭을 전쟁이나 武力의 사용에 呼訴하지 않고 平和的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對話와 協商]

意見對立과 紛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對話(dialogue)는 토론을 통한 상호 讓步와 妥協에 의한 합의 도달이나 一致點을 찾아내는 協商(negotiation)이나 仲裁(bar-

gaining)과는 달리, 자기측 主張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서로가 전달한 內容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자기측 주장을 취하는 會談(talks)으로서의 對話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合意書의 對話는 남북간에 相互理解·妥協·調整 및 合意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交渉 내지 協商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괄하는 概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協商이란 “개인과 집단 또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공통적 이해관계를 조정·타협해 나가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 또는 “商去來에서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흥정이 아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당사자들이 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와같이 對話와 協商은 적대·반목보다는 妥協과 和合을, 一方主義보다는 相互主義와 妥協主義를 지향하는 긍정적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간 對話와 協商이야말로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 當事者가 주체가 되어 武力이나 暴力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意見對立이나 紛爭을 해소할 수 있는 제1차적 방법이다.

그러나 제3자의 개입에 의한 周旋, 仲介, 調停 등의 분쟁해결 방법이 排除되는 것은 아니다.

[平和的 解決]

평화적인 해결방법에 따른다는 뜻은 武力이 아닌 政治的 또는 司法的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政治的 解決方法으로서의 외교적 수단은 ① 紛爭當事者들이 직접 만나서 분쟁을 협의·해결하는 直接交渉 ② 會議形式을 통해 交渉의 公開에 중점을 둠으로써 상호 양보를 이끌어내는 國際會議를 통한 交渉 ③ 제3자가 직접·간접으로 분쟁에 개입, 분쟁당사자들의 양보를 유도하는 周旋 또는 斡旋과 仲介 ④ 당사자들이 協約에 의해 미리 설정한 제3자적 국제기관에 문제 해결을 맡기고 이 기관이 제시하는 紛爭解決 내용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 調停 등이 있다.

法的 紛爭에 대한 解決方法으로 중요한 것은 國際司法裁判所의 재판이다. 남북한이 모두 國際聯속에 가입했으므로 국제연합헌장 제9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적 분쟁을 國際司法裁判所に 제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법적 분쟁을 國際司法裁判所に 제소해도 남과 북이 상호 상대방을 國家로 承認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11條 :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

「基本合意書」 제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軍事停戰에 관한 協定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戰後 일본군의 武裝解除를 위해 미·소간에 임의로 설정한 38° 軍事分界線이 1953년 7월 停戰協定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현재 不可侵 境界線을 명백히 해 둘 필요에 따라 이 規定을 두게 되었다.

[不可侵 境界線]

제11조는 「境界線」으로 표시하고 「國境線」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不可侵協定에서 「國境線」으로 표시하는 것이 通例이나 남북한간의 관계가 민족내부의 特殊關係임을 고려하여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國境線」이라 하지 않고 「境界線」으로 규정한 것이다.

[軍事分界線]

남북한간의 境界線은 1945년 9월 2일 聯合軍 最高司令官의 「一般命令 제 1호」에 의한 38°선과 1953년 7월 27일의 「停戰協定」에 의한 「軍事分界線」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停戰協定」

에 의한 「軍事分界線」이 근 40년동안 남과 북을 分界해 온 현실을 존중하여 「軍事分界線」을 남북한의 「境界線」으로 정한 것이다.

[雙方이 管轄하여 온 區域]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陸上과 海上을 구별하여 보아야 한다. 陸上의 경우, 남측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軍事分界線 이남의 지역(정전협정 제13항 2목)이며, 북측이 관할하여 온 구역은 軍事分界線 이북의 구역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非武裝地帶에 관한 管轄權은 聯合軍司令官과 軍事停戰委員會에 있으며, 군사분계선 이북의 非武裝地帶에 대한 管轄權은 북한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및 軍事停戰委員會에게 각각 있으나(정전협정 제 8 조~제10 조), 이들 지역도 각각 쌍방이 管轄하여 온 區域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海上의 경우 陸上의 경우처럼 「停戰協定」에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나, 사실상 국제연합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된 西海의 「北方境界線」과 東海의 「軍事分界線 延長線」을 북한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휴전협정후 20년간 남북간에 의해 관행으로 유지·준수해 왔으므로, 남북간의 해상구역은 「北方境界線」과 「軍事分界線 延長線」

으로 구획되는 것이다.

停戰協定은 海上境界線과 관련하여 육지나 섬을 기초로 그 隣接水域 존중, 6·25전의 管轄權 존중, 西海 5개 島嶼群은 한국측이, 나머지 섬은 북한측이 관할할 것 등의 原則을 제시하고 있어 北方境界線은 이러한 규정을 具體化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다.

第12條

: 南北軍事共同委員會의 設置·運營

「基本合意書」 제12조는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제12조는 남북간의 平和를 보장하기 위한 軍事的 信賴構築과 軍縮의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軍事練習의 通報와 統制, 軍人士 교류 및 情報交換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攻擊用武器(공격능력)의 除去를 먼저 실시한 후 段階的인 軍縮을 추진토록 규정

한 것이다.

우리측은 軍事的 信賴構築措置를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자는 立場이었으나, 북측이 이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이를 南北 軍事共同委員會가 協議·解決할 문제에 포함시켜 規定한 것이다.

[軍事的 信賴造成]

「軍事的 信賴造成」이란 상대방이 무력으로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信賴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975년 8월 1일 유럽에서의 緊張緩和를 위한 「헬싱키 최종결의」(Helsinki Final Act)에는 「信賴構築措置」(CBM)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86년 9월 19일에 「스톡홀름협약」(Stocholm Document)이 채택되었으며 동 協約에는 「信賴 및 安保構築」(CSBM)이 포함되어 있다. 「基本合意書」 제12조는 「스톡홀름협약」의 내용을 일부 援用한 것이다.

요컨대, 「基本合意書」 제12조의 「軍事的 信賴造成」이란 남북한이 상호 相對方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아니할 것이며, 軍備의 維持는 상대방이 공격해 올 경우 이를 防禦하기 위한 것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環境과 興件을 조성하는 諸般 措置를 말하는 것이다.

軍事的 信賴構築 방안인 「대규모 部隊移動과 軍事練習의 通報 및 統制問題」는 우선 軍事訓練·機動의 사전통보로 의구심을 배제한 후 軍事訓練·機動의 規模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統制」는 「通報」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前方配置 부대의 後方移動 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問題」는 DMZ내에서 停戰協定을 준수, 停戰協定대로 DMZ를 완충지대화하여 상호 武力衝突의 위험을 제거하고 戰爭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DMZ를 停戰協定대로 원상회복하려면 公용화기·자동화기의 제거, 民政警察(1,000명) 초과요원 철수, 共同監視小組 활동 부활, 南北共同監視團 구성·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DMZ의 平和的 利用에는 공동학술조사·공동어로작업의 실시, 특정지역에 면회장소·공동경기장·회의장·우편물 교환소 등 交流센터 설치·운영, 그리고 숙박시설·교역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간 合意에 따라 「平和市」로의 확대 발전도 가능할 것이다.

「軍人士 交流問題」는 軍人士間의 상호 訪問을 통해 그동안 쌓인 敵對感을 풀고 상호 理解를 증진시킴으로써 신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軍事情報의 交換問題」는 상호간에 軍事活動에 대한 透明度를 향상시켜 軍事的 信賴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國防費·兵力등에 관한 자료의 公開 및 交換이 포함될 수 있다.

[軍 縮]

「基本合意書」 제12조의 軍縮 즉, 「軍備縮小」(disarmament)는 「軍備統制」(arms control)와 「軍備의 領土的 制限」(territorial limitation of arms)을 포함하는 意味로 해석해야 한다.

軍備縮小, 軍備減縮(arms reduction), 軍備制限(limitation of armaments), 軍備統制 등은 여러가지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軍備統制는 軍備축소, 軍備감축, 軍備제한을 모두 포함하는 包括的 意味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基本合意書」 제12조의 「軍縮」은 포괄적인 의미의 軍備統制로 해석해야 한다.

「軍備의 領土的 制限」은 통상적 의미의 軍縮의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軍備의 空間的 制限 즉, 일정한 지역의 非武裝化를 의미하며, 이를 中立化(neutralization) 또는 非武裝化(demilitarization)라고 한다.

남북사이의 軍縮은 공격용 무기의 후방이동, 군사비행장의 位置制限 등 軍備의 領土的 制限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基本合意書」 제12조의 「軍縮」은 「軍備의 領土的 制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第13條 : 軍事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

「基本合意書」제13조는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며, 이는 軍事的 信賴構築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12조에서 대부분의 군사적 信賴構築措置 관련 사항이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南北軍事共同委員會의 기능에 포함되었으나 軍事當局者사이의 直通電話 설치는 독립된 軍事的 信賴構築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측은 1982년 2월 1일 「20개 示範實踐事業」 제20항에서 처음 이 문제를 제시한 이래, 주요 對北提案時 수차례 군사당국자간 直通電話 설치를 제안해 왔으며,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政治·軍事的 信賴構築方案의 하나로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 설치”를 提案한 바 있다.

반면에 북한은 1988년 11월 7일 「包括的 平和方案」에서 처음 제시한 이래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의 하나로 주요 提案에 포함시켜 왔다.

따라서 남북한이 直通電話 設置·運營에 관한 구체적 사항만 합의하면 당장 實現可能한 것이며, 이에 관해서는 1972년 7월 4일 「남북 직통전화 가설 및 운용에 관한 합의서」와 현재 운용되고 있는 南北赤十字間 直通電話 운용방식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偶發的 武力衝突]

「基本合意書」 제13조의 「偶發的」 무력충돌은 어느 일방의 「企圖的」인 의사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3조는 直通電話 설치의 목적을 「偶發的」 무력충돌과 그의 확대방지에 局限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사이의 어떤 무력충돌이 「偶發的」인지 「企圖的」인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偶發的」 무력충돌은 어느 일방의 「企圖」에 의한 무력충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軍事當局者 사이의 直通電話]

軍事的 信賴構築措置의 일환으로 直通電話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同 條의 「軍事當局者」는 軍事問題에 관한 당국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측에서는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북측에서는 인민무력부장과 북한군 총참모장을 軍事當局者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直通電話는 현재 남북간에 운용되고 있는 有線電話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군사당국자간 直通電話 설치의 목적이 우발적인 武力衝突과 그 擴大防止라는 점에서 볼 때,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有線뿐만 아니라 無線電話, 나아가 FAX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第15條·第16條 : 經濟 및 非經濟 交流·協力

「基本合意書」 제15조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規定하고, 제16조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등 諸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은 통일과정에서 「社會·文化·經濟共同體」형성에 필히 요구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不信과 對決을 해소하고 異質化된 민족사회의 同質性을 회복하여 統一國家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제15조와 제16조는 經濟交流·協力和 기타 分野의 교류·협력에 관한 根據를 마련한 것이다.

[民族內部交流]

「民族內部交流」로서의 물자교류라는 의미는 南北韓間의 물자 교류가 국가와 국가간의 貿易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기본합의서 서문의 暫定的 特殊關係라는 規定으로부터 당연히 연유되는 것이다.

우리측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 2 조)에 따라 남북간의 物品移動을 輸出·輸入이 아닌 搬出·搬入으로 규정하면서 상호간 搬·出入 물품에 대해서는 內部交易으로 간주, 관세 및 기타 국제무역에서 고려되는 稅金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여러 分野]

제16조는 여러 分野에서의 交流와 協力の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 문학·예술, 출판·보도 등”의 規定은 例示的 規定으로서, 例示된 分野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分野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북한은 「여러 分野」의 내용에 宗教部門이 포함되는 것으로 서로 양해하였다.

第17條·第18條

: 自由往來·接觸 實現과 離散家族 問題 解決

「基本合意書」 제17조는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고 規定하고, 제18조는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제17조는 人的 交流에 관한 규정이고, 제18조는 離散家族 問題解決에 관한 규정이다.

[民族構成員]

정부는 「7·7特別宣言」을 통해 民族構成員의 범위를 남북 및 해외동포로 규정하였으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統一祖國을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基本合意書 제17조에 규정된 民族構成員의 의미는 南北韓 住民과 海外同胞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自由로운 往來와 接觸]

「往來」란 남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 相對方 地域을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며, 「接觸」이란 전화·편지 및 회합을 통한 相互 意見交換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쌍방주민의 自由의사에 따른 왕래·접촉일지라

도 쌍방 當局의 許可를 받지 않고 往來와 接觸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離散家族·親戚]

「離散家族·親戚」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南北韓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 우리측은 1985. 8. 27 제 9차 南北赤十字會談에서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후 출생한 子女를 「남북왕래가족」으로 규정하고, 친척의 範圍를 방계 8촌, 처가 및 외가는 4촌으로 할 것을 提議한 바 있다.

[기타 人道的 問題]

기타 人道的 問題의 개념과 범위는 이산가족·친척의 서신거래, 왕래·상봉·방문 및 再結合이외의 非政治的인 문제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측은 1985. 5. 28 제 8차 적십자 본회담에서 「기타 人道的 問題」로 死亡者의 유품·유골 송환, 분묘이장 등을 例示한 바 있다.

第24條 : 修正·補充

「基本合意書」 제24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앞으로의 南北關係 進展에 대비하여 補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일반적으로 條約의 경우 개정의 質과 量에 따라서 Amendment와 Revision으로 구분되는데 Amendment는 조약의 개별 조항내지 일부 조항을 고치는 것이고, Revision은 條約規定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合意書 영문해석을 Amendments로 한 것에 비추어 보면 本條의 의미는 일부조항 및 개별조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條約改正의 정상적 방법은 當事者들의 合意書에 의하며 「基本合意書」가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조약개정의 一般原則을 강조한 점이다.

특히 규정의 修正·補充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향후 狀況變化에 맞추어 합의서 의무이행을 위한 保障手段 등에 관한 규정을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점이다.

第25條 : 發效節次

[發效에 필요한 節次]

「基本合意書」 제25조는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조항은 終結條項(final clause), 또는 形式條項(formal clause)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內容과는 상관 없이 條約 그 자체에 관한 문제, 즉 조약문의 認證節次, 조약의 效力發生 절차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基本合意書」는 효력의 發生時期와 節次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란 남북 쌍방이 각기 합의서 效力發生을 위한 國內법적 節次를 의미하는 것으로 南北韓이 반드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議會의 批准同意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文本의 交換]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라는 의미는 發效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文本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라는 뜻이며, 이는 구속을 받겠다는 同意表示를 서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기에는 批准書 등의 交換에 의한 방법과 교환을 확인하는 議事錄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基本合意書」는 그 성격상 前者의 방법을 채택하면서도 批准書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文本」이라 하였다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의미는 남과 북사이에 效力을 발생한다는 뜻이며, 이는 남과 북의 內部뿐만 아니라 國際聯合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國際聯合憲章 제

102조에 따라 國際聯合事務局에 등록할 경우 「南北基本合意書」를 國際聯合과 그 關聯機關에 대해 援用할 수 있다.

國際聯合憲章 제102조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한 모든 條約은 가능한 조속히 國際聯合事務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條約은 國際聯合의 여하한 기관에 대해서도 援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韓半島의 非核化 共同宣言

제 5 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3차례에 걸친 代表接觸 끝에 1991년 12월 31일에 채택된 이 「非核化 共同宣言」은 序文과 함께 6개항에 걸친 合意內容을 담고 있다.

이 「非核化 共同宣言」은 그 서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宣言의 目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目的에 따라 南北은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配備, 사용을 하지 아니하며” (1항), ②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2항), ③ “핵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3항), ④ “한반

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4항), ⑤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5항)는 것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이 「非核化 共同宣言」에 담겨진 政策的 意圖는 남북 쌍방이 核武器가 없는 韓半島를 선언함으로써 핵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國際的 潮流에 부응해 나가며, 북한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非核地帶化라는 비현실적인 主張을 사실상 철회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측의 거듭된 非核化政策을 구체화하고 명시함으로써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非核化 共同宣言」이 채택된 과정과 그 구체적 合意內容을 보면 韓半島 非核化에 필요한 제도적 裝置가 두가지 차원에서 일단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북한이 가까운 시일안에 國際原子力機構(IAEA)의 核安全措置協定에 서명·비준하고 엄정한 査察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前提下에 「非核化 共同宣言」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北韓은 지난 1월 7일, 外交部代辯人 聲明을 통해 “가까운 시일안에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이어 가장 빠른 시일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 그것을 비준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하는 시기에 사찰을 받기로 하였다”고 밝힌 후 1992년 1월 30일에는 核安全措施協定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北韓은 가까운 시일안에 이번 署名에 따른 批准과 發效節次를 거쳐 사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非核化 共同宣言」 내용에 「南北 相互査察」 조항을 명문화하여 북한측의 同意를 얻어냈다는 사실이다. 이 「非核化 共同宣言」 제 4 항에서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상호 사찰을 실시한다”는데 합의한 것은 國際原子力機構의 북한에 대한 核査察이 미흡할 수도 있고, 또 한반도 核問題는 우리 민족의 生存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북한의 國際核査察 수용과는 별도로 남북 相互査察을 통해 북한의 核開發 포기를 확인코자 하는 우리의 확고한 立場을 반영시킨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核廢棄宣言으로 알려진 1987년 미·소간 「中距離 核戰力廢棄協定」을 보더라도 상대방이 선정하는 핵시설에 관한 査察實施가 가장 중요한 핵심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번 「非核化 共同宣言」에도 미흡하나마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켜 우리가 지정하는 북한의 핵관련 場所·施設·物質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북한의 核開發을 막을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일단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査察對象을 정함에 있어 우리측의 당초 意圖와는 달리 協商過程에서 북한측의 완강한 반대로 말미암아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으로 限定되게 되었다.

VI. 合意書 履行機構 構成 · 運營

「基本合意書」에 규정되어 있는 각 條項은 대부분 쌍방이 준수해야 할 基本方向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基本合意書」에 의해 남북 쌍방에게 부과된 義務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課題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基本合意書」에는 그 자체내에 「基本合意書」내용을 協議 · 推進하기 위한 각종 機構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담으로써 諸 條項을 구체화하기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 놓고 있다.

1. 履行段階

第 1 段階

: 分野別 「分科委」發足 및 「附屬合意書」採擇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 그리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2월 19일 제 6차 高位級會談에서 발효됨에 따라, 남북한은 1992년 3월 19일 까지 남북정치, 군사, 교류 · 협력 3개의 分科委員會와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를 각각 발족 · 가동시키게 된다.

각 分科委員會는 「基本合意書」에 토대를 두고 해당부분의 구

체적 이행대책의 협의결과에 따라 附屬合意書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며, 또한 「核統制共同委員會는 한반도 非核化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다.

第 2 段階 : 分野別 實踐機構의 發足 및 合意書 履行

제 2 단계에는 附屬合意書에 기초하여 그 履行을 위한 실천기구로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南北連絡事務所」, 「南北軍事共同委員會」, 「南北交流·協力共同委員會」 등을 1992년 5월 19일까지 설치·운영하고, 그외 필요한 部門別 共同委員會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게 된다.

2. 諸 機構의 構成·運營

分科委員會

[構成]

- 각각 委員長 1명과 委員 6명,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委員長과 委員 교체시 사전 통보
- 隨行員은 6명으로 雙方合意에 따라 조정가능

[運營]

- 매월 1회 定期會議 開催, 쌍방향으로 隨時 會議開催 가능
- 開催場所 : 南側地域 「평화의 집」과 北側地域 「통일각」에

서 번갈아 개최, 쌍방 승의로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 가능

- 會議運營 : 쌍방 委員長이 공동운영
- 非公開會議 原則(쌍방 합의로 公開 가능)
- 委員長은 分科委員會 협의결과를 南北高位級會談에 보고

[各 分科委員會의 機能]

〈南北政治分科委員會〉

- 「基本合意書」 제 8 조는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본 회담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規定
- 「基本合意書」의 和解關聯 合意事項(제 1 조~제 7 조)의 구체적 履行方案을 협의
 - 체제인정 및 존중(제 1 조)
 - 내부문제 불간섭(제 2 조)
 - 비방·중상중지(제 3 조)
 - 파괴·전복행위 금지(제 4 조)
 -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노력(제 5 조)
 -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중지와 상호협력(제 6 조)

-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작성(분과위구성·운영합의서 제2조 3항)
- 기타 남북화해에 관한 「남북고위급회담」 위임사항

〈南北軍事分科委員會〉

- 「基本合意書」 제14조는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규정
- 「基本合意書」의 不可侵關聯 합의사항(제9조~제13조)의 구체적 履行方案을 협의
 - 무력불사용 및 무력침략 금지(제9조)
 - 의견대립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제10조)
 - 불가침 경계선 준수(제11조)
 -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실현(제12조)
 -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제13조)
 - 기타 남북불가침 및 군사적 대결해소와 관련한 「남북고위급회담」 위임사항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 「基本合意書」 제23조는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

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
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라고 規定

- 「基本合意書」의 交流·協力관련 조항(제15조~제22조)의
구체적 履行方案을 협의
 - 자원의 공동개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
력(제15조)
 -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
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제16조)
 - 자유왕래 및 접촉실현(제17조)
 -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상봉·방문 실시,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 기타 인도적 문제 해결
(제18조)
 - 우편·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설치·연결 및 비밀
보장(제20조)
 -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 공동진출(제21조)
 -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제22조)
 - 기타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고위급회담」 위임사항

南北連絡事務所

- 「基本合意書」 제 7 조는 “남과 북은 서로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고 規定하여, 「基本合意書」의 이행을 위한 諸般 連絡과 行政的 事項을 관장할 「南北連絡事務所」를 설치토록 규정
- 「基本合意書」는 「南北連絡事務所」의 설치에 관하여 제 1 장 「南北和解」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南北連絡事務所」는 남북화해에 관해서만 連絡과 協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 장 「南北不可侵」, 제 3 장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사항의 連絡과 協議도 추진
 - 人的·物的·情報交流에 관한 제반 連絡·接觸 및 행정적 支援業務 수행

共同委員會

[南北軍事共同委員會]

- 「基本合意書」 제 12 조는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라고 規定

○ 機 能

-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 검증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

- 「非核化共同宣言」 제 5 항은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안에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라고 規定

○ 機 能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사찰의 방법과 절차를 협의
- 비핵화 검증 사찰업무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

- 「基本合意書」 제22조는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라고 規定
- 機能
 - － 자원의 공동개발
 - － 물자교류
 - － 합작투자
 - － 해외공동진출

[其他 部門別 共同委員會]

- 「基本合意書」 제22조의 後段에는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規定
- 「基本合意書」의 非經濟分野 교류・협력관련 조항(제16조~제21조)에 대해 「交流・協力分科委員會」에서 합의된 구체적 履行方案과 분과위원회 委任事項을 실천하며, 관련 實務問題를 협의・추진
- 「통행공동위원회」, 「통신공동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 「인도공동위원회」 등 각 部門別 共同委員會의 구성・운영 가능

Ⅶ. 向後 實踐課題와 展望

남북한은 「基本合意書」와 「非核化 共同宣言」, 그리고 「3개 분과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으로 南北關係의 進展을 이룩할 수 있는 轉機를 마련하였다.

남북한이 3개 合意書에서 약속하고 있는 바를 성실히 履行해 나간다면 1992년은 南北和解·協力の 元年으로 기록되고 民族 共同體로서 상호 共同繁榮의 새 時代를 맞게 될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文書上의 약속만으로는 和解·協力の 새로운 時代가 오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것은 合意書의 성실한 實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70년대초 「7·4南北共同聲明」과 「南北赤十字會談」 및 「南北調節委員會」 등에서 남북간의 合意와 協議機構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實效를 거두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의 合意書 條項들이 선언적인 내용에 치우친 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은 앞으로 이를 보다 具體化시켜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課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 第6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합의서를 발효시킨 후에도 會談初期에 내걸었던 駐韓美軍 撤收, 팀스피리트訓練의 완전 중지, 密入北 人士 석방 등을 다시 요구하고, 「일괄합의·동시실천」을 주장하면서 核施設에 대한 示範査察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향후 合意書 實踐過程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合意書 발효이후 内外의 관심은 合意事項이 제대로 實踐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에 쏠리고 있다.

南北韓이 서로의 合意事項을 성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알찬 열매를 期約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實踐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 約束은 오히려 새로운 不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것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基本合意書」는 남북한 당국이 7천만 겨레와 세계앞에 宣言한 엄숙한 約束이라는 점에서, 이제 남북한은 合意書의 정신을 받들어 合意書 內容 하나하나를 성실히 履行해야 할 民族的 責務를 지니고 있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세계의 變化속에 맞고 있는 平和와 統一의 이 好機를 살리는 것은 南北韓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歷史的 召命이다.

南北韓이 이같은 責務를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和解와 平和에 대한 信念을 굳혀야 하며, 이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과제는 바로 북한의 核開發 拋棄와 離散家族問題 解決이다.

우리 정부가 당면한 최대 懸案課題로서 북한의 核武器開發 拋棄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核武器 보유로 초래될 수 있는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중대한 威脅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南北韓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平和와 和解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信賴와 信念없는 平和狀態속에서는 交流와 協力分野에서의 어떠한 進展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核問題의 해결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한편, 核問題와 함께 南北韓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課題는 1천만 離散家族의 문제이다.

민족의 和解와 統一의 첫걸음은 분단의 비극인 離散家族問題의 해결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산가족의 苦痛을 해소하는 것은 진정한 민족의 和解와 共同繁榮의 첫 문을 열게 되는 象徴이자 信賴回復의 徵表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政府는 南北赤十字會談에서 뿐만아니라 제 2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부터 이 문제의 우선 解決을 거듭 주장해 온 結果, 이의 실천을 合意書 內容에 포함시킨 것이다.

우리 政府는 「基本合意書」의 채택·발효를 계기로 획기적인 南北關係 改善을 기대하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合意書에 규정된 諸條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의 마련에 중점을 두고, 南北韓 사이에 먼저 合意되는 것부터 하나씩 實踐에 옮기면서, 다음 事項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南北 和解分野」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指名 공격, 휴전선 擴聲器 방송, 각종 전단살포 등 誹謗·中傷行爲의 中止와 파괴·전복활동을 禁止토록 하는데 力點을 둘 것이다.

「南北 不可侵分野」에서는 우선 軍事的 信賴構築措置와 한반도 非核化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자간에 直通電話를 설치하고, 쌍방 軍人士의 교류와 정보교환 등 제반 軍事的 信賴構築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南北 交流·協力分野」에서는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高齡 離散家族들의 고향방문이 먼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離散家族의 생사확인, 서신거래, 면회소 설치·운영도 조속히 實現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物資交流·協力」과 관련해서는 남북간 間接交易을 直交易으로 전환시키는 등 經濟交流와 協力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 南北間에 상호 이익이 되고 北韓側이 수용가능한 분야에서 協力事業을 추진하고 제 3국에 南北이 공동으로 進出하는 방안도 적극 摸索해 나갈 것이다.

특히, 남북간 協力事業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過當競爭이나 不當行爲로 말미암아 混亂이나 副作用이 생기지 않도록 政府가 앞장서 그 基盤을 조성하고 적절히 調整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南北이 서로를 올바르게 알고 理解를 넓혀가는 가운데 하루속히 훼손된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方案으로 언론·방송·문화분야에서의 시범적인 交流事業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基本合意書」실천과정에서 「當事者原則」, 「實踐原則」, 「和解原則」등 세가지 基本原則을 일관성있게 견지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忍耐力을 가지고 의연히 對處해 나갈 것이다.

이와함께 「基本合意書」의 성공적인 실천은 汎國民的인 支援과 協調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國民的 合意基盤을 造成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附 錄

統一政策 관련 主要 宣言 및 合意書

南北高位級會談 經過概要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노태우 대통령, 1988. 7. 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지 반세기가 가까워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숭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
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노태우 대통령, 43차 유엔총회 연설, 1988.10.18)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43년 전인 1945년 바로 이때쯤 2차대전의 종전을 맞은 세계는 새로운 희망 속에 국제평화 질서를 담당할 유엔의 탄생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전은 우리 민족에게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수천년간 지켜온 나라를 되찾는 벅찬 환희와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 한 때였을 뿐, 어느날 아침 그것은 국토분단의 슬픔으로 표변하였습니다.

종전의 처리과정에서 항복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강대국들의 편익에 따라 북위 38도 지도상에 한반도의 중간을 자르는 분단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이 결정은 우리 겨레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단은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가르는 높고 험한 장벽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냉전의 거센 폭풍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1950년 6월 어느 평온한 일요일 아침, 침략에 의한 전쟁이

발발하여 나라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이 전쟁에서 이념을 사이에 두고 20개국의 무수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고 300만이 넘는 생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제복을 입고 지원병으로 전선에 나섰던 나는 술한 젊은이와 무고한 사람들이 전화속에 피흘리며 숨져가는 것을 보며 평화와 화해를 갈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분단과 대결은 어떠한 노력으로라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포화를 멈추었으나, 그 결과는 평화도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단절과 대결의 긴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대의 조류가 스쳐가도 한반도의 긴장은 얼어 붙은 동토와 같았습니다.

한국 휴전선상의 시계는 1953년 이후 정지한 채로 서 있어 온 것입니다.

한반도 내의 무력분쟁은 언제라도 세계를 전화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각박한 상황으로 인간적으로 치르어야 했던 대가 또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부모, 남편, 처자와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진 수백만 국민들은 한 세대가 넘도록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동포들 간 가슴 속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절실한 현실을 타개할 길은 과연 없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도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이 오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유엔 총회가 「한반도에서의 평화·화해·대화의 촉진」이라는 시의적절한 의제를 택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의장,

나는 귀하가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총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오늘의 세계에는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전후 체제의 기조가 되어온 냉전적 갈등을 인류의 이성과 양식이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결에서 공존으로, 반목에서 화해로 인류의 기대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희망의 징후를 이 자리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8년을 지속해 온 이란·이라크 전쟁이 하비에르 베레스 데 꾸에야르 사무총장의 훌륭한 통찰력과 지도력에 힘입은 유엔의 중재노력으로 종식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이 평화의 전당에 대해 큰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캄푸치아, 나미비아, 서부사하라에서도 평화를 위한 진일보의 조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간의 미·소정상회담의 결과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를 공포의 전쟁요소를 감축해 가는 실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평화를 향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

나는 바로 2주일 전 막을 내린 서울올림픽의 「화합과 전진」의 정신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24회 올림픽대회는 12년만에 동서, 남북의 세계가 한자리에 모이고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한마당을 이룬 인류화합의 대축제였습니다.

올림픽사상 최대의 이 축제는 평화와 화해가 마침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낙관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르었고 아직도 분쟁의 위험이 있는 땅에서 가장 훌륭한 평화의 축전이 열린 것은 역사의 극적인 반전이며 우리에게 벅찬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것은 평화와 공영에 대한 인류 염원에서 우러나오는 세계의 새 흐름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인류의 제전을 안전한 최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원해 준 세계 모든 나라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4회 올림픽대회는 불과 한 세대전,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떨던 한 민족이 시련을 딛고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어서 이룩한 발전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크나큰 긍지를 느끼며, 한국민의 성취가 인류화합의 물결을 고조시키는 데 이바지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과 30년 전 남의 나라에 의존하던 빈곤한 농업국가가 신
홍산업국가로 발돋움 한 데에는 부지런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의욕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가침한 권리와 타고난 창의, 그리고 자유로운 활
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사회와 자유경쟁체제의 이점은 이
러한 발전을 이끄는 힘찬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통하여 우리의 빠른 성장이 가능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로 부상하고 있습
니다.

무역의 신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교역상대국의 고용과 소득
을 향상시켜 상호의 번영을 촉진해 왔습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시련을 주었으나 동시에
우리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움도 주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
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평화, 번영을 향해 전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에 진보를, 그리고 인류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개방과 교류, 협력과 화해를 촉진하는 길 이외 또 다른
모방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폐쇄와 대립, 적대관계와 분쟁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이 지
구촌 어디에서나 재앙과 고통을 가중시켜 줄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번영, 통일을 열어가는 드높은 자신과 낙관속에 21세기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억압없는 자유를 누리며 각 부분이 자율을 향유케 함으로써 개개인과 사회 구석구석마다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은 우리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의장,

오늘날의 세계는 한 시대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불변하는 것은 변화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유엔이 대결과 분쟁을 해소하는 새로운 화해의 장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온 한반도에서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빚은 불신이 남북한간의 대결을 낳았습니다.

휴전 후 지난 35년간 엄청난 군사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맞서 왔습니다.

이 대결의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은 서로를 가르는 벽을 허물어 서로 개방하고 교류, 협력하여 믿음을 심는 길밖에 없

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난 7월 7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든 대결의 관계를 지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 선언을 통해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간의 통신조차 두절된 수백만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물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와 자유로운 왕래를 제의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해 남북한간에 끊어진 도로와 길을 연결하고 서로가 가진 인력, 기술, 자본을 동원하여 공장을 함께 짓고 국토를 함께 개발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당장 문을 열고 개방을 실시하면서, 통일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상징사업으로 휴전선 안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시」안에서 30년 이상 헤어졌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교류·교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선언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대결의 관계를 지양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그것이 북한동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증진하여 북한의 개방과 발전에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우호 친선 관계를 증진해 가더라도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더욱 협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존중하며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통합을 위해 신뢰를 심는 불가결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정착될 때 남북 쌍방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 많은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인 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년 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관계를 상호신뢰와 공존 공영의 관계로 대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 책임자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 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남북한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의 평화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더욱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 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나라들 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의 통로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결하며 국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넓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들이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 자세를 보 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 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최근 상호 협력관계가 계속 확대·심화되어 온 많 은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 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는 우리의 성장·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기 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 데까지 최선의 협력 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같은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람일 것입니다.

의장,

이제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생동력과 발전에 의 의지, 국제간의 협력강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양문화의 요람이며 태평양지역의 한 중심인 동북아시아는 지난 1세기를 통하여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오늘의 긴장에 이르기까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협의회」를 열 것을 제의합니다.

이 회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모든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이들 관계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에는 이념과 체

제, 입장의 차이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광대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분의 동반자임을 직시한다면 그러한 난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의 현실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유익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의장,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내다보면서 인류역사의 한 장이 종결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것을 느낍니다.

확실히 지구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념보다는 이성과 지혜가 이끄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또다시 세계적 분쟁의 암흑속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방과 협력, 평화를 제쳐놓으면 인류에게 이것을 막을 별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이 인류활동의 주류를 형성하는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한반도에도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민족이 형제애로 화합하는 선율이 인류의 심금을 울릴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5천년 역사상 남을 침략하지 않은 우리민족에게 시련이 그치고 평화와 통일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북의 6천만 겨레와 함께 민족적 대화합을 이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엄숙한 사명이며, 새로 자라나는 세대의 꿈이자 정열인 것입니다.

합치된 노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분쟁과 빈곤이 지배했던 땅에서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열렸듯이 한반도에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넘치는 날은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끝으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노래하고 있는대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훌륭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인류의 복리에 기여함으로써 이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노태우대통령, 국회특별연설, 1989. 9. 11)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 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갯더미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 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 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

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른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거래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

회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가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

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

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 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 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 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

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 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을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의를 창조해 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 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
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1990. 7. 26. 발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과 북측대표단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사이에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가지고 쌍방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회담 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 날짜

제 1 차 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며, 제 2 차 회담은 1990년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다. 다음 회담 날짜는 매차 회담 때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 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 1 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 2 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 의제

회담 의제는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로 한다.

5. 회담 대표단 구성

회담 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
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 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총
장급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회담 수행원과 취재기자

회담 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취재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담 형식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회담은 쌍방 대표단 회담
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총리 단
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 기록

회담 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초
청측은 상대측에 녹음중계선 2회선을 보장하며 텔레비전 녹화
기록을 위해 초단파를 상대측 지역에 보내준다.

10. 회담 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은 필요하면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 회담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는다.
- ③ 초청측은 회담장과 행사장(숙소포함)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 제공한다.

12. 신변안전보장

- ① 초청측은 자기측 지역에 오는 상대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회담 5일전에 판문점에서 상대측에 넘겨준다.
-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 기재, 사진 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쌍방은 자기측 인원들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14. 남북 왕래절차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넘겨준다

② 명단에는 성명,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먼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로 전달한다.

④ 왕래수단은 비행기, 자동차, 기차로 한다. 비행기는 각기 자기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울(김포공항) - 평양(순안비행장) 사이를 직행한다.

⑤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육로로 왕래할 때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며 초청측 지역에서 초청측의 자동차 또는 기차를 이용한다.

⑥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취재활동

①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의 체류기간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② 쌍방은 화해와 단합, 신뢰와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한다.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 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일정을 회담 5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하며 이를 쌍방이 합의하여 확정한다.

17. 편의제공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운반을 보장한다.

18.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 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19.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합의사항에 대한 폐기 및 수정은 쌍방이 합의하여 할 수 있다.

1990년 7월 26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예비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송 한 호

북 남 고 위 급 회 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
단 장 백 남 준

○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공동체를 향하여

(노태우 대통령, 제46차 UN총회 연설, 1991.9.24)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대표 여러분,
나는 3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온 세계의 젊은이들이 인종
과 종교,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서
울올림픽의 신선한 감명을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세계는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올림픽이 구현한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가 현
실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내가 이 연단에 회원국의 대통령으로서 다시 서게 된
사실도 역사의 이 새로운 물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UN에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처음 가입을 신
청했던 때로부터 42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한민족이 인내로 기다려 온 그 오랜세월을 상기한다면, 여
러분은 오늘을 맞는 우리국민의 감회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 존엄한 세계기구에 가입하도록 성원하
고 지지해 준 모든 분들과 우리의 자리가 이 곳에 없었을때
우리를 대변해 준 모든 나라, 모든 분들께 4,300만 한국민이
보내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UN가입을 막아 온 것은 냉전체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 세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그다니스크의 자유노조 근로자들, 부다페스트의 과감한 정부, 프라하의 바츨라프광장에서 자유를 외친 사람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지난 날 동독의 국민들... 이들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들이 허문 것은 이들 스스로를 구속해 온 장벽 뿐만 아니라 인류를 진영과 진영으로 갈라 적대, 대결의 관계에 세워 온 우리 모두의 장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바탕은 누가 무어라 해도 소련의 개혁일 것입니다.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며, 전시대에 일찌기 없던 번영을 이룬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의 성취가 이들을 고무하였습니다.

나는 화해로운 하나의 세계를 소망해 온 모든 사람들과 오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지난 날의 불가능을 현실로 이룬 이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

나는 귀하가 제46차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총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이번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우리의 형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북녘의 우리 형제들과 평화와 통일의 길을 함께 걷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모적인 대결을 지속하는 것은 분단의 비극만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남북한의 UN동시가입은 분단 이후 남북한관계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이제 남북한의 대표가 이 평화의 전당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대하며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한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우리는 하나의 겨레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각각 다른 의석으로 UN에 가입한 것은 가슴아픈 일이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단계입니다.

우리 UN대표단의 자리가 읍서버석에서 회원석으로 불과 수십미터 옮겨 오는 데 40년 넘어 걸렸고 동·서독의 두 의석이 하나로 합쳐지는 데는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은 이 평화의 전당에서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길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분단의 비극을 가져다 준 냉전체제 자체가 와해된 이 세계에서 민족자결에 바탕하여 자주적으로,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나는 한반도에 통일을 성취함으로써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온 인류의 전진에 동참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UN과 회원국 모두가 성원하고 지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그리고 각국 대표여러분,

세계는 세기적 변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억누르는 압제체제는 세계 곳곳에서 해체되고 경직된 이념으로 인한 재난은 끝나고 있습니다.

냉전은 그 의미를 잃고 나라와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변혁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혁명의 유혈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자유의 정신에 의해 역사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변혁은 이제 위대한 출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 인류에게 희망과 무한한 가능성을 안겨 주는 세계의 이 변화가 평화를 구가할 새로운 질서로 형성되기까지는 멀고 험난한 길을 가야 합니다.

지난달 소련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는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속에 그 사흘을 보냈습니다.

탱크의 포구에 장미꽃을 꽂은 모스크바 시민의 승리는 평화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승리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평화는 불가분의 것임을 절감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개혁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소련과 중동부 유럽 여러나라는 수십년을 지켜온 정치, 경제, 사회의 틀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과정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숭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희생은 그 혜택이 미치는 만큼 나누어져야 합니다.

냉전시대 세계는 군비경쟁과 안전보장에 엄청난 자원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세계의 이 큰 변화로 인한 평화의 혜택은 세계 모든 나라, 인류 모두가 오랜 기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번영을 누리는 모든 국가가 지난날 통제된 체제와 중앙계획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전후 냉전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우리 만큼 평화로운 세계를 갈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불과 한 세대전 전쟁의 잿더미위에서 일어서 경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 온 한국은 경제부흥과 민주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이들 나라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풍요를 누리는 나라도... 선진국도 아니지만 소련과 중동부 유럽국가의 개혁을 충심으로 성원하고 우리들의 능력안에서 최대한의 협력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의장,

나는 제43차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세계가 빚어온 모든 고난이 이 땅을 짓밟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지난 3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혁이 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기 전부터 냉전의 벽을 스스로 뛰어 넘어, 소련과 중동부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교류협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오가는 길마저 단절된 채 대결해 온 이들 나라와의 새로운 우호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도 미쳐오고 있음을 보았으며 화해의 위대함을 체험했습니다.

한국민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단된 땅에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UN가입으로 한반도는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170만명의 밀집된 군사력이 250킬로미터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

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의 상태에서 우리는 근 40년간 긴장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기동훈련과 부대이동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감시단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핵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 노

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전력의 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1천만 이산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어진 부모형제의 생사나 거처조차 모르고 사진 한장, 전화 한 통화 주고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나 관계개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은 이 개방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질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UN동시가임으로 새로와진 상황속에서 내달 열릴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한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남북한간에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제, 문화, 체육분야에서 교류가 시작된 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서로의 발전을 위해 서로가 돕는 공영의

관계를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교역은 물론 관광,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합작공장의 건설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한겨레는 1,300년간을 하나의 나라속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왔습니다.

남북한간에 각 분야에 걸쳐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면 민족의 강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급속히 성숙될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한반도만이 냉전으로 분단된 유일한 땅으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를 가르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시간문제일 뿐 역사의 순리입니다.

통일한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의장,

우리는 한반도 뿐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분쟁지역에 하루속히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중동과 캄보디아, 앙골라, 서부 사하라와 중미 등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노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UN이 이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베레스 데 꾸에야르 사무총장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그 요인을 해소하는 노력과 함께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집단안전보장조치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걸프사태에서 UN이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날 대결해 온 나라들이 UN을 중심으로 연합한 것은 평화와 정의가 구현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우리 모두의 신념을 굳건히 해 주었습니다.

UN의 첫 집단안보조치를 통해 자유와 생존을 지킬 수 있었던 대한민국은 UN이 국제사회에 정의를 실현하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나라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으며 인류가 평화속에 살고 있다는 믿음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 온 세계를 파괴해 버릴 수 있는 가공할 무력에 안전을 의존하는 한, 인류는 평화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계에 공포의 균형을 정당화해 온 대결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미·소 두나라가 지난 7월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내며, 그것이 전세계적인 군축을

가속화하는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은 화학무기의 전면 폐기를 지지하며, 국제적인 조약이 체결될 경우 조기에 이에 가입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이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에 대해 새로운 사고와 접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의장,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다툼의 근원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단합되고 인종차별없는 민주적 사회가 출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서고 있듯이 피부색과 민족, 종교와 출신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의장,

남북위원회 보고서는 “기아가 지배하는 곳에 진정한 평화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국민은 오늘날 가난한 나라들이 겪고 있는 궁핍과 굶주림, 저개발과 외채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우려하는 이해와 동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빈국의 단계에서 불과 한세대의 기간에 역동적인 신흥산업국가를 이룩함으로써 가난한 개도국도 노력하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0년전 한국은 1인당 GNP 100달러 미만의 가난한 농업국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교역량 세계 13위, GNP 세계 15위의 나라로 변모하였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시장경제와 개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지런한 국민과 창의에 넘친 기업은 세계의 넓은 시장을 무대로 발전을 이루고 또 그것을 가속화해 나갔습니다.

UN과 세계의 많은 나라가 우리를 돕고 공동번영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사이에 위치한 중간국가로서 남북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감으로써 세계로부터 입은 혜택에 보답할 것입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나눈 물론 자본, 시장, 정보의 교류와 협력을 가속화하는 교량의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개도국의 당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진국의 원조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남북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선진국은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여 국가간의 수평분업을 촉진하고 기술과 정보의 독점을 지양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세계시장은 개방되고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보호주의와 배타적인 지역경제의 블럭화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UN을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환경·테러·마약문제 등 이 세계가 함께 맞고 있는 도전에도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의장,

한 세기가 저물고 새로운 세기가 다가서고 있습니다.

20세기는 그 이전 수천년의 역사가 이룬 것보다도 더 크고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기는 전쟁과 대립, 모순과 비합리로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이제 인류는 이성과 평화에 바탕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물결로 이 세계에 넘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 특히 교통·정보·통신의 혁명은 이 세계를 인류가 한 이웃으로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류에게는 역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녀 온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파란많은 세계를 「평화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현실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모든 나라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의 길을 넓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UN은 현장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세계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으로 인류공동의 이념원을 실현하는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 세계의 이해와 도움만을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복리를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이 평화의 기구에 대한 우리들의 다짐을 새로이 하면서 우

리는 모든 나라와 손에 손잡고 UN이 가는 길로 전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더욱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 진정 자유로운 세계, 그 무엇보다 평화로운 세계 ... 우리의 후예들이 축복으로 여길 내일의 세계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노태우 대통령, 1991. 11. 8)

국민여러분,

나는 오늘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결단을 밝히려 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반세기간의 암울했던 냉전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던 과감한 조치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적대세력들이 손을 잡고 인류공동의 미래를 위해 우호와 협력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의 폐기와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할 무차별살상력을 가진 화학무기의 완전폐기를 위한 협상도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세계를 보며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도 대결의 위험이 사라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세계에서 유독 한반도에서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과 배치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핵무기 폐기와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거부한 채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생물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반도에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 후 근 40년간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제까지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가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큰 우려를 갖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에 응한다면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이러한 적극적인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오히려

려 더욱 비현실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국제적인 의무이행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는 우리의 평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는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과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여 한국내의 핵시설과 핵물질은 철저한 국제사찰을 받도록 하며, 핵연료 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핵무기와 무차별 살상무기가 없는 평화적인 세계를 지향하며,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한다.

우리는 핵과 화학생물무기를 갖지 않는 이와같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이 국제사찰을 피하며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북한도 나의 이 선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함께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분명히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군사안보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제반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핵개발 기도를 하루빨리 포기하여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함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되기를 7천만 동포와 더불어 충심으로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정책을 선언하기에 앞서 정부는 이 정책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의 안보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는 확신위에서 이와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는 북한이 이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와 함께 민족적

비극의 소지를 없애고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 노태우 대통령 「핵부재 선언」

(1991. 12. 18)

국민 여러분,

지난 주 남북한은 근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는 남과 북이 오랜 단절과 대립을 청산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에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평화속에 공존공영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신념으로 이를 추구해 왔습니다.

석달전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이에 이은 이번 합의서의 서명은 한반도 문제해결과 민족통일을 향한 여정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평화와 통일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제부터 남과 북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북의 온 겨레가 소망하는 화해와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을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대결관계를 교류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킴은 물론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냉전은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비와 숭한 비극을 안겨 주었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결과 반목속에 우리 겨레가 치른 희생과 시련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이 어두운 역사를 마무리짓고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여는 평화의 장전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7천만 겨레가 한 나라를 이루어 영광스런 민족사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남북한이 이룬 합의를 온 겨레의 바람대로 구현해 나가기에 앞서 하루속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배듭짓는 일입니다.

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민족의 생존과 이 땅의 평화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협한 일임을 직시하여 지난달 8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경제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재처리 시설의 보유까지 포기한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에게 핵사찰을 피할 어떠한 명분도 주지 않기 위해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남북한의 동시 핵사찰을 실시할 것도 지난 주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에 제안하였습니다.

핵보유 강대국의 군사기지를 사찰에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나,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롭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어야 된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안에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대표접촉에서는 핵문제에 관한 분명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나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여러분과 북한, 그리고 온 세계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관한 한 11월 8일 선언한 비핵화 정책은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자리에서 북한측에 말합니다.

우리가 비핵화를 구현하고 남북한 동시핵사찰을 수용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사찰을 거부할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조속히 체결, 비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국제사찰을 수락하고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남북합의서의 정신에 바탕하여 핵문제를 하루빨리 마무리 지음으로써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있다는 믿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세계각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핵확산을 촉진할 위험성을 안고 있는 중대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당국도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며칠 후 열릴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와 온 세계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올해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합의를 이루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장 남북화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
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unofficial translation)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In keeping with the yearning of the entire Korean people for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divided land;

Reaffirming the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set forth in the July 4(1972)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Determined to remove the state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and achieve national reconciliation;

Also determined to avoid armed aggression and hostilities, reduce tension and ensure peace;

Expressing the desire to realize multi-faceted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dvance common national interests and prosperity;

Recognizing that their relations, not being a relationship between states, constitute a special interim relation-

ship stemming from the process towards unification;

Pledging to exert joint efforts to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Hereby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SOUTH-NORTH RECONCILIATION

Article 1 :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system.

Article 2 : The two sides shall not interfere in each other's internal affairs.

Article 3 : The two sides shall not slander or vilify each other.

Article 4 : The two sides shall not attempt any actions of sabotage or overthrow against each other.

Article 5 : The two sides shall endeavor together to transform 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 into a solid state of pea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shall abide by the present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until such a state of peace has been realized.

Article 6 : The two sides shall cease to compete or confront each other and shall cooperate and endeavor together to promote national prestige and interest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rticle 7 : To ensure close consultations and liaison between the two sides, South-North Liaison Offices shall be established at Panmunjom within three(3) months after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8 : A South-North Political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discussing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South-North reconciliation.

CHAPTER II

SOUTH-NORTH NON-AGGRESSION

Article 9 : The two sides shall not use force against each other and shall not undertake armed ag-

gression against each other.

Article 10 : Differences of views and disputes arising between the two sides shall be resolved peacefully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Article 11 : The South-North demarcation line and areas for nonaggression shall be identical with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pecified in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of July 27, 1953 and the areas that have bee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sides until the present time.

Article 12 : To implement and guarantee non-aggression, the two sides shall set up a South-North Joint Military Commission within three(3)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the said Commission, the two sides shall discuss and carry out steps to build military confidence and realize arms reduction, including the mutual notification and control of major movements of military units and major military exercises, the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emilitarized Zone, exchanges of military personnel and information, phased

reductions in armament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attack capabilities, and verifications thereof.

Article 13 : A telephone hotline shall be installed between the military authorities of the two sides to prevent accidental armed clashes and their escalation.

Article 14 : A South-North Military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in order to discuss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non-aggression and to remove military confrontation.

CHAPTER III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Article 15 : To promote an intergrated and b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welfare of the entire people, the two sides shall engage in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including the joint development of resources, the trade of goods as domestic commerce and joint ventures.

Article 16 : The two sides shall carry out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literature and the arts, health, sports, environment, and publishing and journalism including newspapers,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and publications.

Article 17 : The two sides shall promote free intra-korean travel and contacts for the residents of their respective areas.

Article 18 : The two sides shall permit free correspondence, meetings and visits between dispersed family members and other relatives and shall promote the voluntary reunion of divided families and shall take measures to resolve other humanitarian issues.

Article 19 : The two sides shall reconnect railroads and roads that have been cut off and shall open South-North sea and air transport routes.

Article 20 : The two sides shall establish and link facilities needed for South-North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shall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of intra-Korean mail and telecommunications.

Article 21 : The two sides shall cooperate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various other fields in the international arena and carry out joint undertakings abroad.

Article 22 : To implement accords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economic, cultural and various other fields, the two sides shall establish joint commissions for specific sectors, including a Joint South-North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Commission, within three(3) month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3 : A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within one(1) month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with a view to dis-

cussing concrete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and observance of the accords on South-North exchanges and cooperation.

CHAPTER IV AMENDMENTS AND EFFECTUATION

Article 24 : The Agreement may be amended or supplemented by concurrence between the two sides.

Article 25 :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x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December 13, 1991

Chung Won-shi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on Hyong-muk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hief delegate
of the Sou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Head
of the Nor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

Joint Declaration of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official translation)

To enter into force as of February 19, 1992

The South and the North,

Desiring to eliminate the danger of nuclear war through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us to create an environment and conditions favorable for peac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our country and contribute to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the world,

Declare as follows:

1.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test, manufacture, produce, receive, possess, store, deploy or use nuclear weapons.
2.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use nuclear energy solely for peaceful purposes.
3. The South and the North shall not possess nuclear reprocessing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4.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verif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all conduct in-

spection of the objects selected by the other side and agreed upon between the two sides, in accordance with procedures and methods to be determined by the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5. The South and the North, in order to implement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outh-North Joint Nuclear Control Commission within one(1) month of the effectuation of this joint declaration
6. This Joint Declaration shall enter into force as of the day the two sides exchange appropriate instrument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their respective procedures for bringing it into effect.

Signed on January 20, 1992

Chung Won-shik

Yon Hyong-muk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Premier of the
Administration
Counci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hief delegate of the
Sou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Head of the
North delegation to the
South-North
High-Level Talks

○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고위급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남북군사분과위원회,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 한다.
- ② 쌍방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③ 수행원은 6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2 조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부문의 남북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다.

제 3 조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월 1 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각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에서의 협의

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각 분과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총리가 서명하고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여 쌍방 총리가 합의문건을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2월 19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 노태우 대통령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특별담화

(1992. 2. 19)

친애하는 7천만 내외 동포 여러분,

오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반세기동안 서로가 대결과 반목속에 살아야 했던 남과 북은 이제 불행했던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 노력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이처럼 소중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온 겨레가 함께 나누는 보람입니다.

이제부터 남과 북은 함께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약속은 그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때 비로소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실천이 뒤따르지 않을 때 그 약속은 오히려 새로운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와 불가침, 교류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는 이것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발효된 합의와 선언내용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국내외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나는 북한의 최고책임자도 「남북합의서」와 「비핵선언」의 내용을 성실하게 실천하겠다는 뜻을 국내외에 선언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씻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대한 모든 의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겨레의 안전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과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와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짐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 위험한 걸림돌을 하루빨리 제거함으로써 「남북합의서」에 따른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7천만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 이 희망이 현실로 가시화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대

망의 21세기에는 통일된 나라로 당당히 국제무대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7천만 우리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며 우리 후손들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역사적인 과업입니다. 우리 세대는 역사와 민족앞에 책임을 지고 이 중대한 과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겨레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있는 나라, 전쟁의 두려움이 없고 민주와 번영이 넘치는 통일된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겨레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한민족 영광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더욱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 남북고위급회담 경과개요

남북고위급회담은 강영훈 국무총리가 1988년 12월 18일 북한의 정무원 총리 연형묵에게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1989년 1월 16일 연형묵 총리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함과 동시에 그에 앞서 예비회담을 갖자고 수정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후 예비회담 8회('89. 2. 8~'90. 7. 26) 및 「합의서 문안 정리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2회('90. 7. 6~7. 12) 끝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게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북의 총리가 만난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은 90년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어, 남북한간의 제반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

우리측은 제 1차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의 합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을 포함한 8개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의 공동인식을 유도코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에서 준수해야 할 3개원칙과 3개항의 긴급과제라는 것을 내걸고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쌍방간의 교류·협력도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군축 등 정치·군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추진할 수 있다는 경색된 입장을 보였다.

북한측은 여전히 「하나의 조선」정책을 내세워 상호체제의 인정·존중을 거부하였으며, 정치·군사문제의 우선 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회담에 호응해 나온 것이 개혁·개방이라는 대외적 압력을 회피하고 북한의 대서방 접근을 위한 방편으로 이를 이용하는 한편, 우리 내부에 통일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명분을 조성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이처럼 쌍방이 본질적인 입장의 차이를 노정시키고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회담을 끝내고 말았으나, 분단 45년만에 남북의 총리가 처음 만났다는 사실 자체와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제1차회담은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 1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0. 9. 4~7, 서울)

南 側	北 側
<p>〈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p> <p>① 통일이전까지 상대방의 체제 인정·존중</p> <p>② 상호 비방·중상중지 및 상대방 내정에 대한 불간섭</p> <p>③ 상호 의견대립과 분쟁은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p> <p>④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중지</p> <p>⑤ 자유왕래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사회개방과 민족적 유대를 회복</p> <p>⑥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 실현</p> <p>⑦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해 공동노력</p> <p>⑧ 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p>	<p>〈회담 전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3개 원칙〉</p> <p>①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재확인 및 준수</p> <p>② 일방의 이익보다 민족공동의 이익을 우선</p> <p>③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3개항 긴급문제〉</p> <p>① 유엔가입 문제</p> <p>② 팀스피리트훈련 문제</p> <p>③ 방북구속자 석방문제</p>

南 側	北 側
<p>〈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산가족의 자유방문과 재결합을 조속히 실현하고 60세이상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즉각 실현 ② 민족명절과 기념일 전후 민족대교류 실현 및 문화행사 교환 개최 ③ 각 분야별 남북동포간의 교류협력 방안 협의 실현 ④ 교역문호 개방 및 물자교류 ⑤ 자원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경제분야에서의 공동 대외 진출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 ⑥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관광사업 공동추진 ⑦ 남북간 철도·도로 복원 및 해로·공로 개설 ⑧ 우편물 교환 및 통신 전화 개통 ⑨ 통행·통신·통상에 관한 합의서 채택 ⑩ 부총리급 경제협력공동기구 설치 	<p>〈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호 비방 및 대결고취 정치행사의 중지 ② 통일에 방해되는 법률적·제도적 장치 제거 ③ 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사상의 자유 보장 ④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물리적 장벽 제거 ⑤ 각 정당·단체 및 각계각층 사람들의 자유래왕·접촉 실현 ⑥ 국제정치무대에 남북 공동 진출·협력

南 側	北 側
<p>〈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p> <p>① 상호 체제인정 및 존중의 바탕위에서 상대방 지명공격, 비방·중상 등의 중지</p> <p>② 신문·방송 및 출판물 상호 개방</p> <p>③ 서울·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 설치</p> <p>④ 군인사 상호 방문 및 교류 실시</p> <p>⑤ 군사정보 상호공개 및 교환</p> <p>⑥ 군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의 사전통보와 상대방 참관초청</p> <p>⑦ 한국의 국방부장관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 설치 운영</p> <p>⑧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실현 및 평화적 이용</p> <p>〈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p> <p>① 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환</p> <p>② 상호 동수보유 원칙을 적용,</p>	<p>〈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p> <p>(1) 남북신뢰조성</p> <p>① 군사훈련과 연습의 제한</p> <p>②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p> <p>③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안전장치 강구</p> <p>(2) 남북무력감축</p> <p>④ 무력의 단계적 감축</p> <p>⑤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p> <p>⑥ 군축정형의 상호통보 및 검증실현</p> <p>(3) 외국무력의 철수</p> <p>⑦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p> <p>⑧ 조선반도에서 외국군 철수 위해 공동노력</p> <p>(4)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p> <p>⑨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장치 강구 (쌍방 군총참모장급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p> <p>※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방안 토의와 함께 남북불가침선</p>

南 側	北 側
<p>군사적 상호 균형유지의 바탕위에서 동수 균형감축</p> <p>③ 상비전력 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유사군조직 함께 감축</p> <p>④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을 위한 현장검증과 감시실시</p> <p>⑤ 쌍방 군사력의 최종유지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 쌍방 협의하에 결정</p>	<p>언이 채택되고 미·북한간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을 강조</p> <p>※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면 각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과 교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p>

2차회담('90. 10. 16~19)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이 1차회담시 주장한 「3개 원칙」 등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안)」에 수용하여 새로운 안으로 제시한데 이어, 북한측의 불가침선언 내용까지 대폭 포함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문제를 병행 토의하자고 하면서도 불가침선언의 채택만을 고집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고위급회담을 군사회담화 하려는 입장을 드러냈다.

• 2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0. 10. 16~19, 평양)

南 側	北 側
<p>〈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합의</p> <p>① 7·4공동성명의 3원칙 재확인, 상대방 체제인정·존중, 내정불간섭</p> <p>② 경제교류·협력촉진과 인적</p>	<p>〈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7·4공동성명의 3원칙을 재확인·준수하고 상대방의 사상·제도를 인정·존중하며 상대방 내부분제에 불간섭할 것을 약속</p> <p>① 상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및 무력불침해</p> <p>②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p>

南 側	北 側
<p>교류·협력 실시</p> <p>③ 무력불사용 및 파괴·전복 행위 금지</p> <p>④ 분쟁의 평화적 해결</p> <p>⑤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 실현</p> <p>⑥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p> <p>⑦ 비방·중상 중지</p> <p>⑧ 국제무대에서의 경쟁 대결 중지 및 상호협력 민족이익·자존위해 공동노력</p> <p>○ 통행·통신·경제교류 협력에 관한 제안 제시</p> <p>— 남북통행에 관한 제안(10개항)</p> <p>— 남북통신에 관한 제안(9개항)</p> <p>—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제안(13개항)</p> <p>○ 회담진전을 위해 2개분과위 구성·운영제의</p> <p>— 교류협력협의회</p> <p>— 정치군사협의회</p>	<p>해결</p> <p>③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7.27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설정</p> <p>④ 불가침 약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방지 및 무력의 단계적 감축</p> <p>⑤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방지를 위해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p> <p>⑥ 동 선언은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가능</p> <p>⑦ 동 선언은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통고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통일 실현까지 효력 유지</p>

제 3 차 회담('90. 12. 11~14)에서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데 이어, 지난 1, 2차 회담과 3차례 실무대표접촉과정에서 제기된 북한측의 여러가지 주장들을 포괄적으로 수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실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첫째 쌍방간에 불가침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의 뒷받침이 필요하며, 둘째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전복시키려는 정책이나 태도를 포기해야 하고, 셋째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보장장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같은 입장에 기초하여 우리측은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1개월이내에 구성·운영되는 정치군사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할 8개항의 「불가침에 관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동안 진행된 회담에 대한 3가지 견해라는 것을 밝히면서, 처음부터 회담부진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선전적 태도를 보이는 한편, 그들이 제시한 「불가침선언 초안」과 우리측이 2차 회담시 내놓은 「화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혼합하여 「남북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이라는 하나의 문건을 채택하자고 주장, 「불가침선언」의 우선적 채택 입장을 고수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과 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미·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남과 북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스스로 밝힘으로써, 그들이 불가침선언을 서두르는 의도를 드러냈다.

우리측은 이처럼 쌍방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 2차 회담에서의 쌍방 제안중 의견이 접근되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합의·실천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남북간 상호 비방·중상중지, 91년 음력설날을 전후한 제 2차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등 5개 분야에 걸친 실천방안들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마저 거부하고 말았다.

이와같이 제 3차 회담 역시 쌍방간 기본입장의 차이로 아무런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으나, 1, 2차 회담에 비해 쌍방의 의견과 입장이 보다 명백히 표명되고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점과 함께 고위급 회담을 지속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공통인식을 서로 확인하게 된 점 등이 성과라고 하겠다.

• 3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0. 12. 24~14, 서울)

南 側	北 側
<p>〈기본합의서 채택의 필요성〉</p> <p>①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p> <p>② 고위급회담의 의제인 교류협력실시와 대결상태 해소를 다같이 협의·해결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기본 「틀」 마련</p> <p>③ 남북관계 기본 「틀」을 정립한 기초위에서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실효성있는 불가침을 마련</p> <p>〈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수정안)〉</p> <p style="text-align: center;">= 전 문 =</p> <p>①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재확인</p> <p>②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 추진</p> <p>③ 긴장상태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p>	<p>〈회담에 대한 3가지 견해〉</p> <p>① 나라의 평화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 필요</p> <p>②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의존하는 자세 배격</p> <p>③ 착실한 회담을 위해서 신의 있고 진실한 대화 자세 필요</p> <p>〈북남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초안)〉</p> <p style="text-align: center;">= 전 문 =</p> <p>① 7·4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원칙 재확인</p> <p>②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p>

南 側	北 側
<p>④ 상호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공동노력 경주</p> <p style="text-align: center;">= 기본사항 =</p> <p>① 통일시까지 상대방의 체제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분쟁문제의 평화적해결, 비방·증상행위 중지</p> <p>② 신문, 라디오·TV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실시</p> <p>③ 경제·인적 교류협력 실시 및 이를 위한 통행, 통신,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p> <p>④ 이산가족들의 서신왕래 및 상봉·방문실시와 재결합 추진</p> <p>⑤ 군비경쟁지양,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p> <p>⑥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p> <p>⑦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평화보장장치 마련</p> <p>⑧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p> <p>⑨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p>	<p style="text-align: center;">= 내 용 =</p> <p>①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의 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의견상이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 중지</p> <p>②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 군비경쟁 중지, 군사적 신뢰조성과 단계적 군축실현</p> <p>③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7.27부의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p> <p>④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방지를 위해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p> <p>⑤ 각계인사·동포들간의 자유로운 대왕과 접촉 실현</p> <p>⑥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실현, 과학·기술·교육 등 각 분야에서 성과와 경험의 교</p>

南 側	北 側
<p>에 교류협력과 정치군사분과위 설치</p> <p>⑩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발생</p> <p>〈남북불가침에 관한 방안〉</p> <p>(1) 무력불사용 및 침략행위 금지</p> <p>(2) 의견대립과 분쟁의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p> <p>(3) 불가침의 영역은 1953. 7. 27 부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해 온 영역으로 규정</p> <p>(4)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정책노선 포기 및 전복·교란 행위 금지</p> <p>(5) 군사적 대결 및 군비경쟁상태의 해소와 불가침 보장을 위한 조치 강구</p> <p>① 군사정보 교환 및 군인사 상호 방문·교류실시</p> <p>② 군부대 기동훈련 및 이동의 사전통보 및 참관단</p>	<p>환 및 협력</p> <p>⑦ 교통·통신망 연결</p> <p>⑧ 국제무대에서 경쟁과 대결 중지, 대외적 협력과 공동추진</p> <p>⑨ 동 선언의 이행과 담보에 관한 대책토의를 위해 본회담테두리안에서 분과위원회 설치</p> <p>⑩ 동 선언은 서명·교환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통일시까지 효력지속</p>

南 側	北 側
<p>교환</p> <p>③ 군사당국자간 직통 전화 설치·운영</p> <p>④ 남북간 군사력 불균형 시 정</p> <p>⑤ 군사정전협정 준수, 비무 장지대의 완충지대화·평 화적 이용</p> <p>⑥ 현장검증단과 상주 감시 단 교환·운영</p> <p>(6)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p> <p>(7) 불가침에 관한 국제적 보 장장치 강구</p> <p>(8) 기 체결한 양자 및 다자간 조약·협정에 불영향</p> <p><쌍방 제안중 의견이 접근되고 실현가능한 문제부터 합의· 실천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다 음 방안 제시></p> <p>(1) 1991.1.1, 0時를 기해 남 북간 상호 비방·중상 중 지</p> <p>① 특정인사들에 대한 지명</p>	

南 側	北 側
<p>공격행위 중지</p> <p>② 군사분계선상에서의 확성기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비방·중상 중지</p> <p>③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금지</p> <p>(2)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p> <p>① 1991년 음력설을 기해 제 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실시</p> <p>② 남북적십자회담 조속 재개</p> <p>(3) 남북 경제교류·협력 실현</p> <p>① 호혜정신과 상호보완적 견지에서 필요한 물자 직교역</p> <p>②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공동추진 등 경제협력사업 추진</p> <p>③ 설악산·금강산을 비롯한 관광자원 공동개발</p> <p>(4)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p> <p>① 남북고위급군사당국자간</p>	

南 側	北 側
직통전화 설치·운영 ②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 사전통보 (5) 남북총리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이처럼 쌍방간의 제의내용이 점차 타협·절충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은 제4차 회담('91.2.25~28 예정)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측이 평양방송('91.2.8)을 통해 우리측의 걸프전쟁과 관련한 경계태세와 팀스피리트훈련을 왜곡·비난하면서 회담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측은 걸프전쟁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의료지원과 수송단 파견 등 국제사회의 수익자로서 당연한 의무이행을 했을 따름이며, 더욱이 팀스피리트훈련이 공개적이고 방어적 훈련임은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로서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참관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쌍방총리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과 체육인·예술인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고, 탁구와 축구국제경기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출전키로 합의하는 등 남북한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서 북한측이 이처럼 갑자기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조치를 취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남북대화를 대남 교

란·전북전략의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측은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남북당국간 대화와 민간급 통일대화를 병행추진하고, △남북간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교류와 정치분야의 협력교류가 병행되어야 하며, △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가 소집되어야 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우리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남북대화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라고 강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우리측 태도변화의 표시로서 최소한 ① 불가침선언 채택문제 ②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쌍방합의시까지 계속 협의하는 문제 ③ 방북구속자의 석방문제 ④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등 민간급 통일대화의 추진문제 ⑤ 국가보안법 철폐문제 ⑥ 「범민련」 남측본부의 결성허용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 사실상 남북고위급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결국 북한측이 91년도 김일성 신년사(1.1)를 통해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한 이후, 평민당 등 3개 야당 대표들에게 남북정당간 접촉을 주장한 점이라든지, 「예총」, 「전교조」,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등에 방송을 통한 편지를 보냄으로써 민중차원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한 사실은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의 비중을 낮춤과 동시에 지난 1948년 이래 계속 제기해온 군중집회형 연석회의방식의 대남 통일전선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한편 갖은 우여곡절끝에 제 4 차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직후, 북한측은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91. 8. 19)하자 또다시 우리측 지역에서의 콜레라 발생을 구실로 하여 평양에서의 회담 개최를 거부하면서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쿠데타가 끝내 실패하게 되고, 북한측도 제 4 차회담 일자의 변경을 수락해 옴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이 속개될 수 있었다.

제 3 차회담 개최후 10개월만에 열린 제 4 차회담('91. 10. 22~25, 평양)은 그간의 실무대표 접촉 등을 통해 쌍방의 입장이 상호 조정됨으로써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최근 남북간에 인적·물적교류가 증대되는 등 교류·협력의 길을 넓혀가고 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함으로써 남북이 공존공영관계를 이루어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노태우대통령이 46차 유엔총회 연설('91. 9. 24)에서 제시한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하며, △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관계 개선에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단일합의서로 「남북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측에 대해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할 것과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우리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단일합의서가 「일괄 합의」, 「동시집행원칙」과 「화해」, 「불가침」의 명기를 강조해온 북한측 주장을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간 북한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을 고려하면서 전체 조문을 유사하도록 조정하고 북한측 제안중 빠져있는 중요내용과 실천성을 보장하는 기본적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남북간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당면과제로서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및 7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의 조속한 고향방문을 실시할 것과 남북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하고, 설악산·금강산을 비롯한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지금까지 고위급회담이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한 것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사이의 우열를 겨루려는 뿌리

깊은 대결의식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시장경제를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단정하고, 남북관계에서 약육강식의 법칙을 강요당하게 되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유엔군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대미 평화협정 체결 등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남한내 핵무기 철거가 북한에 대한 핵사찰에 앞서 토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억지를 부리는 한편, 한반도 비핵지대화 실현이 평화를 마련하는데서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긴급히 제안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의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불가침선언과 군축의 우선해결 의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화해와 협력·교류 실현을 위한 제반문제도 함께 협의·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쌍방은 회담기간중의 실무대표접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합의내용을 정리·조정하여 회담을 끝낸 후, 합의서의 형식, 명칭, 내용구성 체계, 합의서 문안조정을 위한 판문점 대표접촉 개최 등 5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발표하였다.

소연방의 해체 등 급변와중에서 열린 제4차회담에서 우리측은 과거 1년간 끌어온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하루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경주

했으며, 비록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안 내용에까지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합의서의 명칭과 내용구성 체계에 합의하고 상방 대표접촉을 계속키로 한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그동안 우리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 1개월 이내에 구성될 2개의 분과위원회(정치군사분과위, 교류협력분과위)에서 불가침문제와 3통문제를 함께 협의·해결한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이를 본회담에서 일괄 타결키로 하고 포괄적인 단일합의서(안)을 제시한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한 북한측도 대일수교 및 대미 관계개선의 필요성, 중국의 남북관계 개선권유 등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지난 세차례의 회담때와는 달리 △법률적·제도적 장애의 제거 조항 삭제 △이산가족문제 해결 조항 첨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 조항의 신설에 동의하는 등 비교적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가능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측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 개방과 교류 △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강구 △현 휴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로의 전환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을 위한 실천조치 및 3통기구 설치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타 조약이나 협정에 불영향 등 남북

관계 개선에 필수불가결한 중요사항들을 합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 제 4차 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1. 10. 22~25, 평양)

南 側	北 側
<p>〈화해·불가침과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안)〉</p> <p style="text-align: center;">= 전 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재확인 ○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화해 방향으로 대화추진 ○ 긴장상태 완화와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 통일시까지 남북관계가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인정 ○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공동의 노력 경주 <p style="text-align: center;">= 기본사항 =</p> <p>제 1 조 상대방 체제존중, 비방 중상 중지, 내부분쟁 불간섭</p> <p>제 2 조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p>	<p>〈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초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남 불가침 제 1 조 상대방에 대한 무력사용 및 침략 금지 제 2 조 의견상이와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제 3 조 불가침 경계선은 1953. 7.27부 군사정전협정 규정에 따름 제 4 조 군비경쟁 중지 및 군축 실현 제 5 조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운영 제 6 조 동 선언 발효후 2개월 내에 북남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제 7 조 불가침의 존중을 위한 대외적 조치 강구

南 側	北 側
<p>개방과 교류 실시</p> <p>제 3 조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 상봉, 방문 실시 및 재결합 추진</p> <p>제 4 조 상대방에 대한 침략, 파괴·전복활동 금지, 불가침의 영역은 군사정전협정에 따라 각기 관할지역으로 함.</p> <p>제 5 조 상호간의 의견대립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p> <p>제 6 조 군비경쟁 지양,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p> <p>① 상호 군사정보 교환 및 군 인사간의 상호 방문과 교류 실현</p> <p>② 기동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단 초청 교환</p> <p>③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p> <p>④ 비무장지대의 완충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p> <p>⑤ 군사력의 불균형 시정 및 군비축소 협의</p>	<p>2. 북남 화해</p> <p>제 8 조 상대방의 사상·제도 인정·존중</p> <p>제 9 조 상대방의 내부문제 불간섭</p> <p>제 10 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p> <p>제 11 조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 금지</p> <p>제 12 조 각계 인사·동포들의 자유로운 래왕·접촉 실현</p> <p>제 13 조 동 선언 발효후 2개월 내에 북남 정치분과위를 구성·운영</p> <p>3. 북남 협력·교류</p> <p>제 14 조 민족경제의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한 경제협력·교류 실현</p> <p>제 15 조 과학, 기술, 교육, 보건, 체육, 보도 등 각 분야에서의 성과와 경험 교환·협력</p>

南 側	北 側
<p>⑥ 현장검증과 상호 감시체 제 교환운영</p> <p>⑦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내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p> <p>제 7 조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의 전환노력 및 평화 체제 마련시까지 현 정전협정 준수</p> <p>제 8 조 경제, 교통, 체신, 학 술, 교육, 문화, 예술, 보도, 체육, 보건, 기 술, 종교, 환경보전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실시</p> <p>제 9 조 자유로운 통행, 통신, 통상 및 경제 협력 지 원·보장</p> <p>① 육로·해로·항로개설 및 통과지점 지정. 장단과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하며 경의선 철도와 문산 ·개성간의 도로 연결</p> <p>② 상대측 지역 방문 주민은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p>	<p>제16조 끊어진 철도·도로 연 결, 해로·항로 개설 및 체신망 연결</p> <p>제17조 인도적 분야에서의 상 호 협력·교류 실현 및 이산가족·친척들 의 고통해소 대책 강 구</p> <p>제18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및 대외 공동진 출</p> <p>제19조 동 선언 발효후 2개월 내에 북남 협력교류분 과위원회 구성·운영</p> <p>4. 수정 및 효력</p> <p>제20조 쌍방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 가능</p> <p>제21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분 교환일부터 효력발생</p> <p><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 한 선언(초안)></p> <p>제 1 조 핵무기의 시험, 생산, 반입, 소유 사용 금지</p> <p>제 2 조 핵무기 배비금지, 핵무</p>

南 側	北 側
<p>따름</p> <p>③ 자기측 지역 방문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p> <p>④ 판문점에 우편교환소 설치 및 전기통신교류 연결·발전</p> <p>⑤ 우편·전기통신에 대한 비밀보장 및 군사적 목적 이용 금지</p> <p>⑥ 우편·전기통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국제적 협약에 따라 해결</p> <p>⑦ 물자교역과 경제협력은 품목별, 사업별로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p> <p>⑧ 상호간의 물자교역에 대한 관세면제 및 청산계정 결제원칙 적용</p> <p>⑨ 자본의 이동보장 및 자기측에 투자된 자본 보호조치 강구</p> <p>⑩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내에 남북통행위원회, 남</p>	<p>기 적재 비행기, 함선의 영공 통과·착륙·기항 금지</p> <p>제 3 조 핵무기 전개·저장 및 핵우산 제공협약 체결 금지</p> <p>제 4 조 핵무기와 핵장비 동원이나 핵전쟁을 가정한 군사 연습 금지</p> <p>제 5 조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 철수 및 핵기지 철폐를 위해 공동노력</p> <p>제 6 조 미국 핵무기의 완전철수와 핵기지 철폐 공동 확인, 동시사찰의 무이행 및 비핵지대화 선언</p> <p>제 7 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대외적 조치강구</p> <p>제 8 조 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설치</p> <p>제 9 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부터 효력 발생</p>

南 側	北 側
<p>북통신위원회, 남북통상 및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 운영</p> <p>제10조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및 민족의 이익 과 자존을 위해 공동 노력</p> <p>제11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 락대표부 설치</p> <p>제12조 정치군사분과위원회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설치</p> <p>제13조 본 합의서는 양자·다 자간의 조약에 불영향</p> <p>제14조 쌍방 합의에 의해 수 정 가능</p> <p>제15조 발효절차를 거쳐 문본 교환일부터 효력발생</p>	

남북쌍방은 제 4 차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조정과 문안정리를 위한 네차례의 대표접촉('91. 11. 11~26)을 판문점에서 가진 결과, 합의서 서문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내고 그 밖의 일부조항들에 대해서도 그 분류와 내용조정에 있어서 상

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쌍방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중요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실효성있는 합의서 채택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쌍방 합의가 용이하게끔 제 4 차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의 조항과 문안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하였으며, 특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적극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상호 체제존중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을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견지, 원칙적·선언적 합의서만을 강조하면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기피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를 어렵게 하였다.

예컨대 북한측은 「하나의 조선」논리에 배치된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의 설치를 반대하는 한편, 불가침 이행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명시를 거부하였으며, 교류·협력 실시를 위한 통행·통신 및 경제교류·협력기구의 설치를 거부하는 등 합의서 실천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결국 남북쌍방은 부분적인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기본입장과 연계된 9개항의 본질문제에 대해서는 절충하지 못한 채 속개된 제 5 차회담('91. 12. 10~13)에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두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합의서 내용에 대한 쟁점을 타결한데 이

어, 문안정리까지 완료한 후 쌍방총리간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함께 쌍방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991년 12월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합의하는 등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제 6 차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해 나가려는 총정에서 노태우대통령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단행('91. 11. 8)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측이 하루속히 핵사찰을 수용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불가침에 합의해 놓고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사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하였으며, 남북쌍방이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자고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노태우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을 핵문제에 대해 우리측이 일보 전진한 것으로 평가한데 이어, 그동안 판문점에서의 대표접촉에서 제시한 합의서(안)을 일부 수정, 우리측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조항을 수용하는 한편, 교류협

력부문에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분야의 협력교류”를 명시하고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설치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결국 남북쌍방은 합의서(안)의 내용조정과 문안정리를 위해 제 5차회담 기간중에 두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하여 서문과 25개 조항으로 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공동발표문을 타결, 채택·서명하기에 이르렀다.

5차회담시 쌍방 제의내용(91.12.10~13, 서울)

南 側	北 側
<p><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p> <p>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화해를 이룩하며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고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간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p>	<p><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안)></p> <p>북과 남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해와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를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p>

南 側	北 側
<p>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p>	<p>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p>
<p>〈남북화해〉</p>	<p>〈북남화해〉</p>
<p>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p>	<p>제 1 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p>
<p>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아니함</p>	<p>제 2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아니함</p>
<p>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함.</p>	<p>제 3 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함.</p>
<p>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p>	<p>제 4 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함.</p>
<p>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정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p>	<p>제 14 조 북과 남은 현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불가침 분야로 분류)</p>
<p>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p>	<p>제 5 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p>

南 側	北 側
<p>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p> <p>제 7 조 남과 북은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2개월 이내에 판문점에서 상설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며,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감.</p>	<p>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p> <p>제 6 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안에 판문점에 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p>
<p>제 8 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협의</p>	<p>제 7 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테두리안에서 북남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p>
<p>〈남북불가침〉</p>	<p>〈북남불가침〉</p>
<p>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함.</p>	<p>제 8 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함.</p>
<p>제 10 조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p>	<p>제 9 조 북과 남은 의견상이와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p>

南 側	北 側
<p>해결</p> <p>제11조 남북간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해상에서의 불가침 구역은 군사정전협정 발효 이후 쌍방이 각기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함.</p>	<p>제10조 북과 남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터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지역으로 함.</p>
<p>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군비경쟁을 지양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 이동의 사전통보, 훈련참관단의 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함.</p>	<p>제11조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동시에 군축을 실현</p>
<p>제13조 남과 북은 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기습공격능력을 우선 제거하고 쌍방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군비축소를 추진</p>	<p>제13조 북과 남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p>
<p>제14조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의 이행을 위하</p>	

南 側	北 側
<p>여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현 장검증을 실시하며 상주감 시체제를 교환·운영</p>	
<p>제15조 남과 북은 제12조부터 제15 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 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p>	
<p>제16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 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사태 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 통전화를 설치·운영</p>	<p>제12조 북과 남은 당면한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 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 자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p>
<p>제17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태 두리 안에 남북군사분과위 원회를 설치하여 남북불가 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 기 위한 추가적인 세반 군 사문제를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교류협력〉</p>	<p>제15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안에 본회담 태두 리안에서 북남군사분과위원 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 한 합의의 이행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p> <p style="text-align: center;">〈북남교류협력〉</p>
<p>제2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p>	<p>제16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 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p>

南 側	北 側
<p>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족 내부의 교역으로서의 물자 교역과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공동 대외진출 등 상호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p>	<p>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합작투자,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p>
<p>제18조 남과 북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비롯하여 교육, 문화·예술, 종교, 보건·환경, 체육, 과학·기술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실시</p>	<p>제17조 북과 남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실현</p>
<p>제20조 남과 북은 쌍방 주민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보장</p>	<p>제18조 북과 남은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p>
<p>제19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상봉 및 방문을 즉각 실현하고 이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p>	<p>제19조 북과 남은 인도적 분야에서 호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상봉, 서신 거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p>
<p>제21조 남과 북은 육로·해로·공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하며, 우선 경의선 철</p>	<p>제20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p>

南 側	北 側
도와 문산·개성간의 도로를 연결	
제22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 (제23조의 공동대외진출에 포함)	제21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
	제22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 진출
제24조 남과 북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통행위원회, 남북통신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제23조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안에 북남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제25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	제24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북남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협의

南 側	北 側
〈수정 및 발효〉	〈수정 및 발효〉
제26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이미 각기 체결하여 발효중인 양자 또는 다자간의 조약이나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없 음)
제27조 본 합의서는 쌍방에 의해 수정할 수 있음	제2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음.
제28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이후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제26조 이 합의서는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91년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함에 따라 쌍방 각기 고위급회담 대표 2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대표접촉을 시작하였다.

제 1 차 대표접촉에서 우리측은 제 5 차 고위급회담중 제시했던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내놓으면서 북한이 '92. 1. 15까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고 비준·발효시킬 것과 '92. 1. 31까지 시범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측은 종전의 「비핵지대화 선언」을 철회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 불보유 등을 명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두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쌍방은 미해결 항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여 상호 사찰문제 등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문안에 합의, 공동발표하게 되었다.

핵문제 관련 대표접촉시 쌍방 제의내용 ('91. 12. 26 ~ 12. 31)

南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p> <p>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이땅에서 화학·생물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여, 「핵무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 준수 및 국제원자력 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 체결하여 각기 자기측 지역내의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을 것을 수락하면서, 현존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하</p>	<p style="text-align: center;">〈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함.</p>

南 側	北 側
<p>는데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함. 2.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함. 3. 남과 북은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 4. 남과 북은 쌍방이 보유하는 핵시설과 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상기 조항들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물질과 장소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하며 사찰의 대상을 상대측에서 선정 5. 남과 북은 4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쌍방이 합의하는 별도의 기구에서 협의·결정 	<p>제 1 조 :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음.</p> <p>제 2 조 :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비를 금지하며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 착륙 및 기항을 금지</p> <p>제 3 조 : 북과 남은 자기 지역에 핵무기의 전개, 저장을 허용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어떠한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않음.</p> <p>제 4 조 :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영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정한 일체 군사연습을 하지 않음.</p> <p>제 5 조 :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거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p>

南 側	北 側
	<p>제 6 조 :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군해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해기지의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해동시사찰의무를 이행하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내외에 공포</p> <p>제 7 조 : 북과 남은 미국과 조선반도 주변의 핵무기소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데 대한 대외적 조치를 취함.</p> <p>제 8 조 : 북과 남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를 선언발표 후 빠른 시일안에 내움.</p> <p>제 9 조 :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p>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북간의 통일노력이 결실을 맺게 됨에 따라 제 6차 남북고위급회담('92.2.8~21, 평양)에서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발효 문건을 교환하고,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서명·교환함으로써 3개 문건을 발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쌍방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분과위 운영문제와 3월중의 1차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는 2월중에 계속 협의키로 하였다.

우리측은 분과위 구성전이라도 70세 이상 고령자의 고향방문을 우선 실시할 것 등과 이번 회담에서 「남북핵통제공동위」 구성에 관한 합의서 및 시범사찰문제 등에 합의할 것을 강력히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일괄 합의, 동시 실천」 논리로 우리측 제의를 대체로 거부하는 한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미군 철수, 방북 구속자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등과 연계시키면서 회담의 진전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남북고위급회담 일지

1992. 3 현재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89. 2. 8, 평화의 집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3. 2, 통일각	제 2 차 "	
10.12, 평화의 집	제 3 차 "	
11.15, 통일각	제 4 차 "	
12.20, 평화의 집	제 5 차 "	
'90. 1.31, 통일각	제 6 차 "	
7. 3, 평화의 집	제 7 차 "	
7. 6, 중감위 회의실	제 1 차 합의서 문안정리 관련 실무대표 접촉	
7.12, 중감위 회의실	제 2 차 "	
7.26, 통일각	제 8 차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 의서」 서명 및 교환
9. 4~ 7, 서울	제 1 차 남북고위급회담	
10.16~19, 평양	제 2 차 "	
12.11~14, 서울	제 3 차 "	
'91.10.22~25, 평양	제 4 차 "	
12.10~14, 서울	제 5 차 "	「남북사이의 화해 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 서」 합의 및 남북 총리 서명
12.26, 통일각	한반도해문제관련 제 1 차 대표접촉	
12.28, 평화의 집	" 제 2 차 "	
12.31, 통일각	" 제 3 차 "	

일자 및 장소	회 담 내 용	비 고
'92. 1.13, 중감위회의실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문건 교환을 위한 제 1차 대표접촉	
1.21, 중감위회의실	동 제 2차 대표접촉	쌍방 총리가 서명('92, 1.20)한 「비핵화 공동선언」문안의 교환
1.23, 평화의 집	분과위구성 · 운영방안 협의를위한 제 1차 대표접촉	
1.29, 통일각	동 제 2차 대표접촉	
2. 7, 평화의 집	동 제 3차 대표접촉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서명
2.18~21, 평양	제 6차 남북고위급 회담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제 1차 대표접촉 (2.19)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분과위 구성 · 운영 합의서」의 문본교환 및 발효
2.27, 통일각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제 2차 대표접촉	
3. 3, 평화의 집	동 제 3차 대표접촉	
3. 9, 평화의 집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 1차회의	
3.13, 통일각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 1차회의	
3.18, 평화의 집	남북교류 · 협력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	
5. 5~ 8, 서울	제 7차 남북고위급 회담	

「南北基本合意書」解説

1992年 3月 10日 印刷

1992年 3月 14日 發行

發行處 統一院 統一政策室

第 2 政 策 官 室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720-2148, 725-0762

印刷處 웃 고 문 화 사

(非賣品)

92-3-24